

# 북한의 무역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2000. 11

연구책임자 : 손 희 두 (수석연구원)

구분	연구보고 2000-10	발행처		연구자	손희두
제목	<b>북한의 무역관련제도에 관한 연구</b>				
요약문	<p>북한은 법적·제도적 정비 및 보완작업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대외 무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강화와 동시에 변화한 국제환경에서 자본주의시장 접근에 적합한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98년 헌법 개정과 함께 권력구조를 개편한 이후 무역관련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통제와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개혁·개방에 대한 경계감을 표출함과 아울러 대외무역의 조직 개편과 제도화를 통해 무역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것이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접근방식이다.</p> <p>이 연구보고서는 1990년대에 있어서 경제정책 변화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대외무역제도 변화추세와 관련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p> <p>제1장에서는 북한의 대외무역제도 및 대외무역조직 개편의 의미와 연구 방향에 관해 개관하고 있다.</p> <p>제2장에서는 헌법상 대외무역관련조항 및 무역담당조직의 변천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북한의 무역제도 관련법체계를 북한영역 내에 적용되는 일반법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무역관련법규 및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p> <p>제3장에서는 북한영역 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무역관련제도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1998년 3월 채택된 『무역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중국의 대외무역법과 비교·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통관 및 관세제도, 대외거래상 외환관리제도, 결제제도, 대외경제계약제도 및 대외경제중재제도 등에 관한 내용 검토와 분석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일본간에 체결된 북·일간 상품거래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무역관련제도들이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고찰하고 있다.</p> <p>제4장에서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무역제도와 남북한 교류협력제도를 북한의 무역제도와 비교·검토하였다. 특히 최근 남북한간에 합의된 투자보장, 이종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중재 등에 관한 4대 합의서의 의의를 고찰하였다.</p> <p>제5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북한의 무역제도 변화가 가지는 의미와 한계, 그리고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p>				
키워드	북한, 남북한, 중국, 무역, 무역제도, 무역법, 교류협력, 통관, 관세, 외화 관리, 중재, 대외경제, 상품거래, 합의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 목 차

제 1 장 서 론 .....	5
제 2 장 북한 무역제도의 변천과 법체계 .....	9
제 1 절 헌법상 대외무역관련조항의 변천 .....	9
제 2 절 무역담당조직의 변천 .....	11
제 3 절 북한의 무역제도 관련법체계 .....	15
제 3 장 북한 무역제도의 주요 내용 및 분석 .....	19
제 1 절 무역법의 주요 내용 검토 .....	19
1. 무역법의 기본 .....	19
2. 무역회사의 지위와 설립, 관리운영 절차 .....	23
3. 무역계획의 작성 .....	24
4. 수출입 질서 .....	26
5. 지도통제 .....	28
6. 중국 대외무역법과의 비교·검토 .....	31
제 2 절 통관 및 관세제도 .....	41
1. 세관법의 기본 .....	41
2. 세관수속 .....	42
3. 세관검사 .....	42
4. 관세 .....	43
5. 제재 및 신소청원 .....	44
제 3 절 대외거래상 외환관리제도 .....	45
1. 외화관리법의 적용범위 .....	46
2. 대외거래상 외화의 이용 .....	47
3. 외화의 반출입 .....	49
4. 외환관리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 .....	49

제 4 절 기타 무역관련제도 .....	50
1. 대외무역상의 결제제도 .....	50
2. 대외경제계약제도 .....	52
3. 대외경제중재제도 .....	61
제 5 절 북·일 무역에 관한 사례검토 .....	68
1. 북·일간의 무역제도 .....	68
2. 북·일간 합의서의 주요 내용 .....	70
3. 북·일간 무역제도에 대한 검토 .....	82
제 4 장 특수지역 무역제도와 의 비교 .....	85
제 1 절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무역제도와 의 비교 .....	85
1. 무역의 주체 .....	86
2. 무역의 지도기관 .....	87
3. 무역활동의 원칙 .....	89
4. 통관 및 관세제도 .....	89
5. 외화관리 및 결제제도 .....	91
6. 분쟁해결절차 .....	92
제 2 절 남북한교류협력제도와 의 비교 .....	93
1. 남북한 교류협력제도의 의의 .....	94
2. 남북한 교역의 주체 .....	94
3. 남북한 교역의 지도기관 .....	95
4. 남북한 교역상의 계약과 이행 .....	95
5. 남북한 교역상 분쟁해결절차 .....	96
제 5 장 결 론: 북한 무역제도의 시사점 .....	99
부 록 .....	103
1. 북한의 무역법 해설 .....	103
2.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	107
3. 조·일양국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간의 합의서 .....	114
<참고문헌> .....	127

## 제1장 서론

1990년대에 들어 북한경제는 사회주의경제체제 자체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내부적 문제점과 공산권의 몰락 등 외부적 충격의 누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였다. 원자재와 에너지 공급, 그리고 식량의 부족으로 1990년 이후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만성적인 경제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한편으로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기치 하에서 자력갱생과 중공업 우선정책 등 과거의 폐쇄적 경제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운영시스템에 관한 제도적 보완작업과 국가통제력 강화를 통하여 생산활동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sup>1)</sup> 이는 정책의 상호모순이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는 개혁·개방의 부정적인 효과를 극도로 경계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최근 변화한 현실을 수용하여 경제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대외경제활동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경제관련제도를 법제화하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하여 방어적인 경제정책을 통하여 내부정비를 강화하면서도, 경제회생에 필요한 외부의 경제·기술 도입을 위한 최소한의 통로는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sup>2)</sup> 북한경제가 1999년에 들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sup>3)</sup>은 이러한 대내외적 노력의 중요한 결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정책 및 제도정비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 
- 1) 북한 무역성 김용문 부상의 인터뷰에서도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을 적극적으로 보강하는 방향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朝鮮問題研究所, 『朝鮮資料』 1999년 5월호, 60면 참조.
  - 2) 임강택, “대외무역정책”,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1999년 9월호, 16면 참조.
  - 3) 북한은 1999년도에 6.2%의 GDP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2000년 7월호, 107면 참조.

먼저, 북한은 1993년 말부터 농업·경공업·무역 등의 3대제일주의를 채택<sup>4)</sup>해 왔으나, 이 가운데 ‘무역제일주의’의 정책기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경제난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한 수출을 무리하게 증대시키는 노력을 지양하고, 국내경제의 생산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sup>5)</sup> 북한의 무역성 부상은 무역정책의 방향에 관하여 “지금까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견지해 왔고, 현재도 이 노선에 변화는 없다. 다른 아시아제국과 같이 수출주도형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역의존도는 높지 않다”고 전제하고, “사회주의시장의 소멸에 의해 일시적 난국에 직면했다고 해서 장기적 전망을 가지지 않고 타국에 전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경제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위에 공헌하는 방향으로 무역을 발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sup>6)</sup> 이는 북한당국이 한계에 도달한 수출 증대와 외화벌이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당분간 붕괴상태에 직면한 국내경제의 활성화에 관심을 집중하겠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외화를 보충하는 방편으로 관광산업과 같은 비제조업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외국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진력할 것임을 보여준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법적·제도적 정비 및 보완작업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강화와 동시에 변화한 국제환경에서 자본주의시장 접근에 적합한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은 『무역법』의 채택(1998. 3)을 통하여 경제난의 와중에서 이완된 무역질서의 체계화를 추진하였으며, 개정 『헌법』(1998. 9)에서는 그 동안 국가가 독점해 왔던 대외무역을 국가 외에 사회협동단체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4) 3대제일주의는 1993년 12월 당중앙위 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3대제일주의에 대한 북한측의 자세한 설명은 김웅호,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관철하는 것은 현 시기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3) 참조.

5) 북한은 『로동신문』과 『근로자』의 공동논설을 통해서 “외화가 있어야 경제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면서 대외무역에만 치중하는 것은 옳은 해결방도”가 아니며, 대외무역사업도 자립적인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기초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로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 1998. 9. 17.

6) 朝鮮問題研究所, 앞의 자료 참조.

『인민경제계획법』(1999. 4)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계획에 예견된 제품을 먼저 생산해야 한다”(제32조)고 규정하여 외화 획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외경제중재법』(1999. 7)을 채택하여 무역증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무역분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1998년 헌법 개정과 함께 권력구조를 개편한 이후 무역관련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통제와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이 『무역성 당총회』를 지도한 날(1965년 1월 28일)을 기념하여 1997년 1월 23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발표하고, 매년 1월 28일을 『무역절』로 제정하는 등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하기도 했다.<sup>7)</sup>

이처럼 개혁·개방에 대한 경계감을 표출함과 아울러 대외무역의 조직개편과 제도화를 통해 무역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것이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접근방식이다.

이 연구는 1990년대에 있어서 경제정책 변화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대외무역제도 변화추세와 관련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7) 1965년 1월 김일성은 『무역일꾼들의 당성을 단련하여 대외무역에서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노작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이 무역절을 제정한 것은 무역규모가 90년대 들어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 여파로 70년대 수준인 20억불대로 격감 추세를 보였고, 1993년 말 이래 『무역제일주의』를 시정방침으로 설정, 무역확대에 총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김일성이 제시한 무역사업에 대한 관심을 해당 종사자들에게 환기시키고 동 부문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 제 1 장 서 론



## 제 2 장 북한 무역제도의 변천과 법체계

### 제 1 절 헌법상 대외무역관련조항의 변천

북한 헌법상 대외무역에 관한 조항은 1972년 헌법 제34조에서 처음으로 “대외무역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1992년 헌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현행헌법 제36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대외무역은 국가독점으로부터 탈피하여 사회협동단체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헌법 제20조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규정한 것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외무역을 국가가 독점해 왔던 이유는 다른 나라의 경제적 간섭과 국제시장의 변동으로부터 오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합치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외무역의 국가독점을 포기하고 사회협동단체로까지 그 문호를 넓힌 것은 대외무역을 보다 다양하고 활발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독점의 외형적인 포기가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 역할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경제가 계획경제라는 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34조는 인민경제는 계획경제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199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회의에서는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함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인민경제계획법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계획경제(인민경제계획법 제2조)로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 밑에 인민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것은 일관된 정책이며(인민경제계획법 제3조), 국가계획기관과 기

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근거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인민경제계획법 제11조), 이를 정확히 실현하는 것은 의무적이다(인민경제계획법 제27조).

다음으로 북한에서는 사회협동단체의 소유가 국가의 소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헌법 제21조 후단)할 수 있다.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며, 사회협동단체는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같은 것 정도만을 소유할 수 있다(헌법 제22조). 그리고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하고(헌법 제22조 후단),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헌법 제23조).

따라서 사회협동단체의 경제활동은 국가의 보호와 지도 하에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전인민적소유 즉, 국가의 소유로 전환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독점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했다고는 볼 수 없다. 1980년대 이후 내각(정무원)의 대외무역기관 외에 노동당, 군부, 각 지방행정기관 등이 무역회사를 앞다투어 설립하여 외화획득에 나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역업무를 각 단위에 허용한 것을 무역의 자유화·분권화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이다. 즉,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며, 무역회사별로 수출입무역을 전문화하고, 무역가격이 단일화되어 있는 무역체계로서, 그것은 본질상 국가의 단일무역체계라는 것이다.<sup>8)</sup>

그러므로 헌법 조항의 개정은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단위들이 다양화, 다각화된 현실을 뒤늦게나마 헌법에 반영한 결과일 뿐 무역체계의 본질적 변화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이것이 이미 북한내부

8) 리신희,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4), 31면 참조.

의 변화로 이미 관행화되어 있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조항의 개정으로 대외무역 창구의 다원화를 통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외무역형태를 창출해 나갈 가능성을 보다 공식적으로 담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헌법 제36조 후단에서는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72년 헌법에서부터 변함없이 존치되어 온 것으로 대외무역에서 생길 수 있는 강대국들의 대국주의·민족이기주의를 배격하고, 다른 나라와 평등한 관계에서 경제교류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과 경제적 관계를 가지기 원하는 자본주의국가들과의 사이에서도 완전히 평등한 입장에서 대외무역을 행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이 조항의 현재적 의미는 미국 등 서방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반감과 이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성 부상 김용문은 “공화국에서는 특수경제지대를 창설하기 이전에도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왔으며, 사회주의시장의 소멸 이후는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여 일관된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일부 서측제국의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책동과 경제제재는 날로 노골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곤란한 점이 적지 않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해 일부 서측제국이 정치적 야망을 하루빨리 버리고, 상호존중의 입장에 서서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갈 것을 주장한다”고 말한 바 있다.<sup>10)</sup>

## 제 2 절 무역담당조직의 변천

북한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조직은 1998년 9월 6일 헌법 개정에 의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대폭적으로 정비되었다. 무역담당조직으로는 국가계획위원회, 무역성, 무역성 산하의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무역회사 등이 있다.

9) 정동윤,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법”, 『북한법 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 1994, 685면.

10) 朝鮮問題研究所, 앞의 자료 참조.

국가계획위원회는 내각에 소속되어 국가의 정책에 근거하여 인민경제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어김없이 실현하도록 지도하는 핵심부서이다. 북한의 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더욱 중요성을 지닌다.<sup>11)</sup> 1999년 4월 인민경제계획법이 채택됨으로써 국가계획위원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무역부문도 인민경제의 일부분인 만큼 무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도하는 것은 국가계획위원회의 주요한 책무 중의 하나이다. 인민경제계획법 제32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계획에 예견된 제품을 먼저 생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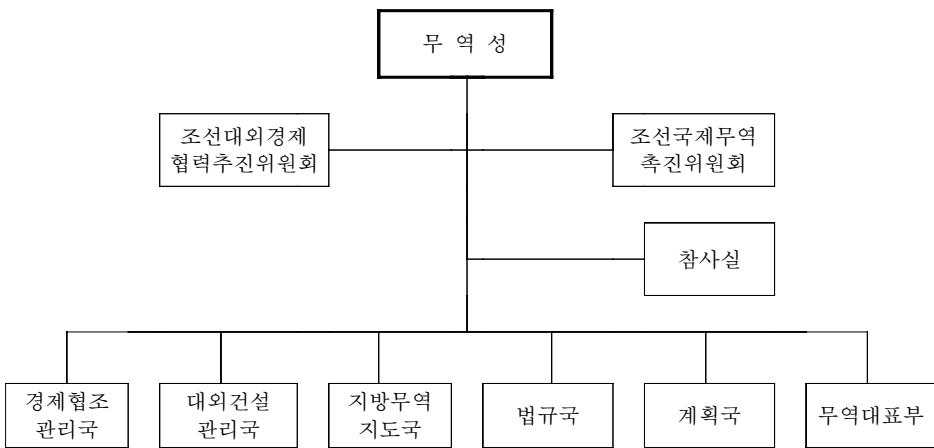
무역관련 조직의 개편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정무원의 대외경제위원회를 폐지하고 내각에 무역성을 신설한 것이다. 대외경제위원회는 그 동안 정무원 내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수립되는 국가무역에 관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대외경제부문 관련업무 전반을 관장해 왔으며, 외국과의 경제협력관련 각종 협정 체결,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사업 추진, 무역관련 전반 업무, 해외시장 조사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sup>12)</sup> 무역성에는 <그림1>과 같이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던 무역관련 기능들이 통합되게 됨으로써 대외무역의 중추적인 기구로 부각되었다. 무역성에는 무역업무는 물론 세관업무, 외국회사와의 합영사업 및 운송, 대남교역 등을 담당하는 기구들이 편성되어 있고,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반관반민 성격의 기구들을 산하에 두고 있다. 특히,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유치 및 개방특구로 지정된 나진·선봉지대의 개발을 주로 관장하는 기구이며,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산하에 여러 무역회사를 둔 무역업무 전담 기구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외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1) 생전의 김일성은 1990년 5월 한 회의에서 정무원(현재의 내각)이 경제사령부이며,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사령부인 정무원의 작전국이라고 평가하며 중요성을 부여했다고 한다. 권경복, “정무원의 작전국: 국가계획위원회”,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1998년 3월호, 78면 참조.

12) 통일원, 『북한무역상사 등 관련기관 일람』, 1997, 17면.

있다.<sup>13)</sup> 북한은 또 유사한 조직을 통폐합시키고, 무역정책 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의 역점을 두었다. 다시 말해 종전의 대외건설총국과 남남합작회사를 ‘대외건설관리국’으로 합병하고, 경제합작국과 합영지도국을 묶어 ‘경제협조관리국’으로 재편하였다. 또한 무역성 산하에 참사실을 새로 만들어 무역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를 전담케 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림1> 북한 무역성의 조직 구조<sup>14)</sup>



북한의 무역회사는 국가무역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자로서 국가의 지도와 통제하에서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거하여 외국과의 수출입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영기업소이다. 조직 개편 전에는 무역회사는 원칙적으로 정무원 산하의 대외경제위원회가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과 군부의 주요 기관들이 무역회사를 소유하고 각자가 독립채산방식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난립해 왔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대외경제위원회가 수출입허가를 통해서 대외교역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통제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sup>15)</sup> 그런데

13) 권경복, “북한의 무역조직 개편과 시사점”,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1999년 7월호, 79면.

14) 권경복, 앞의 글, 79면 참조.

15)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8, 49~50면 참조.

무역조직의 개편과 함께 북한은 상품 수출선이 없는 회사의 통폐합과 경영구조의 단일화·전문화 원칙에 의거하여 무역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작업에 착수했다. 각 성을 포함한 정부기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일부 무역회사를 제외한 기타 무역회사를 모두 무역성 관할 범위에 넣고 대외경제협력위원회 소속 회사도 무역성 소속으로 이관한 것이다.<sup>16)</sup>

더욱이 각 도(직할시)는 한 개의 무역회사만 보유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에는 모두 무역성의 통일적인 관리를 받게 함으로써 무역성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시켰다. 여기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소속과 군 관련 무역회사도 상응하는 정리 조치를 단행, 북한의 전체 무역회사 수는 1997년경 300여 개에 이르던 것이 1999년 초에는 100여 개로 전체의 2/3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sup>17)</sup>

한편, 북한의 무역기구 가운데 대남교역부문은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산하기구로 알려진 민족경제협력연합회<sup>18)</sup>가 주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대남 민간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단일 창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경제실무나 교류실무를 맡는 ‘실무기구’가 아닌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정책기구’이며,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그 실무기구라는 것이다.<sup>19)</sup>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의 존재는 1998년 6월경 정주영

---

16) 권경복, 앞의 글, 80면 참조.

17) 권경복, 앞의 글.

18) 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조직 개편 전에는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의 대남경제관계 담당조직이었다. 1990년대 초 대남관계를 주도했던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가 한국기업들의 방북에 따른 초청과 수수료 등의 문제로 인하여 대외경제위원회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대남경제 관련 창구의 역할은 ‘조선광명성경제연합회’가 떠맡았으며, 이 연합회의 북경대표부가 북한의 남한창구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광명성연합회가 현대그룹의 방북 및 경제협력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각된 민족경제연합회로 개명한 것이라고 한다. 임강택, 앞의 책, 45면 참조.

19) 임강택, 앞의 책, 45면 각주 참조.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는 무역관련조직 개편전에는 대외경제위원회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무역성 소속인지, 아니면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원회) 소속인지를 밝혀주는 명확한 자료는 없다. 다만, 무역성이 주로 남한을 제외한 다른 외국 기업과의 무역이나 경제협력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 또한 남쪽과의 각종 경제교류 사업은 동포사업으로 규정해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민경련이 내각의 무역성 소속이 아님이 분명하다는 견해가 있다. 오히려 중앙당 외곽조직인 아태평화위원회의 지휘·통제를 받거나 혹은 상호 역할분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는 것이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과정에서 공식 확인되었으며, 최근 남한기업과의 각종 임가공사업·대북투자를 망라하고 있다.<sup>20)</sup> 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산하에 광명성총회사, 삼천리총회사, 개선무역회사(옛 광명성무역총회사),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고려상업은행 등 큰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다. 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현재 중국에 두 곳의 대표부도 운영중인데, 베이징(北京)과 단둥(丹東)에 설치되어 있다.<sup>21)</sup>

### 제 3 절 북한의 무역제도 관련법체계

북한의 무역제도와 관련한 법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북한영역 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무역관련법제를 들 수 있는데, <표1>에서 보다시피 여기에는 대외무역에 관한 총괄법인 「무역법」을 비롯하여 통관 및 관세제도에 관한 「세관법」, 외화관리 및 대외결제에 관한 「외화관리법」, 대외경제분야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외경제계약법」, 그리고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한 「대외경제중재법」 등이 이에 속한다. 1998년 3월에 북한은 대외무역의 체계와 질서를 규정한 ‘무역법’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sup>22)</sup> 아직 법조문 자체는 대외적

---

다. 그래서 경제사업일지라도 남북관계를 감안해 정치적인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아태평화위가 전면에 나서고, 순수경제사업쪽에 가까우면 민경련이 처리하는 형태의 역할분담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권오홍,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 및 경제·무역조직 정비 현황과 전망”,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1999년 4월호, 94면 참조. 그러나 무역성 산하 단체의 장은 보통 무역부상직도 동시에 맡아왔는데,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현재 민경련의 정운업 회장은 무역성 지도국장(부상급)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경련이 무역성에 소속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2000년 9월 23일자 참조.

20) 2000년의 경우에만 해도 2월 전국어민총연합회와 민경련간에 「민간어업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경련간에 경제협력 협의, 7월 하나로통신이 민경련 산하 삼천리총회사와 ADSL 신호분배기 임가공계약을 체결, 11월 한국토지공사와 민경련간에 개성공단 사업부지 협의 등 민경련이 대남 경제협력의 창구가 되었고, 정운업 민경련 회장 겸 무역성 지도국장(부상급)이 남북경협 실무접촉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활동하였다.

21) 권경복, 앞의 글, 80면 참조.

22) 북한에서 무역법이 새로 채택된 사실은 『민주조선』이 1998년 3월 10일, 13일 및 19일자로 3회에 걸쳐 무역법에 대한 법규해설을 연재하고, 또한 3월 24일 조선중앙통신이 대외에 발표함으로써 알려졌다, 1996년 2월 14일 정무원 결정으로 제

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부기관지인 『민주조선』에 연재된 법규해설<sup>23)</sup>을 통해 내용을 고찰할 수 밖에 없는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다음으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sup>24)</sup>를 중심으로 한 무역관련법제인데, 여기에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투자자와 관련한 기업 설립에 관한 각종 법제들로서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투자은행법』,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내에 투자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유경제무역지대 국내투자기업 창설 및 운영규정』, 그리고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의 대외무역과 관련한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자유무역항규정』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sup>25)</sup>

그리고 대외무역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고, 또한 북한의 법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합의서들도 북한의 대외무역제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91년 12월 13일 체결되고, 다음 해 2월 19일 발효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비롯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정된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의 제1조에는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가공무역을 발전시켜 생산을 정상화하고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며 외화 수입을 늘이기 위하여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이전에도 무역법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23) 『민주조선』, 1998년 3월 10일, 13일 및 17일자 각 2면 참조.

24)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라진·선봉 이외의 지역에도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할 가능성은 일단 배제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관련법규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용어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로 변경되었다. 이에 관하여 상세히는 이찬우,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개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main/info/nk/law/lawsub3.php3> 참조.

25) 북한의 합영법, 합작법에 따르면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가 아닌 북한영역에도 합영기업 또는 합작기업을 창설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창설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합영법 제2조 및 합작법 제5조 참조.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아직 공식적으로 발효되지는 않았으나 2000년 11월 11일 가서명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등 4대 합의서는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획기적인 제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무역법제를 총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세 종류의 법제를 모두 검토해야 할 것이나, 너무나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는 북한영역 내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무역관련법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무역법제를 연구·검토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 관련법제와 남북한교류협력법제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표1> 북한의 무역제도 관련 법제

분류	법명	제·개정사항	
		제정년월일	최종 개정
일반법규	무역법	1998. 3	
	세관법	1993. 11. 17	
	외화관리법	1993. 1. 31	1999. 2. 26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1994. 6. 27	
	대외경제계약법	1995. 2. 22	
	대외경제중재법	1999. 8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관련법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1993. 1. 31	1999. 2. 26
	합영법	1994. 1. 20	1999. 2. 26
	합영법 시행세칙	1992. 10. 16	
	합작법	1992. 10. 5	1999. 2. 26
	외국인투자법	1992. 10. 5	1999. 2. 26
	외국인기업법	1992. 10. 5	1999. 2. 26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1994. 3. 29	
	자유경제무역지대 국내투자기업 창설 및 운영규정	1997. 5. 17	
	외국투자은행법	1993. 11. 24	1999. 2. 26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	1995. 6. 28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1996. 2. 14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1996. 7. 15	
	자유무역항규정	1994. 4. 28	

<표2> 남북한간 교류·협력관련 주요 합의문서

명칭	체결 또는 발효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 2. 19 (발효)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5. 7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 9. 17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2000. 11. 11 (가서명)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

## 제 3 장 북한 무역제도의 주요 내용 및 분석

### 제 1 절 무역법의 주요 내용 검토

북한이 1998년 3월 채택한 것으로 알려진 무역법은 전5장 58조로 구성되어 있다. 무역법을 새로이 채택한 것은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추진되어온 대외무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하겠다는 의도와 또한 국제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규범과 방식에 의거하여 대외무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아직 그 전문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민주조선』의 법규해설 자료<sup>26)</sup>를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1. 무역법의 기본

무역법 제1장은 무역법의 기본으로, 무역법의 사명과 무역을 함에 있어 지키지 않으면 안될 원칙, 요구가 규정되어 있다.

##### (1) 무역법의 사명

무역법은 우선, “무역에 있어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하는 것을 자기사명으로 하는 규정”<sup>27)</sup>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 인민경제발전에 공헌하는 일은 무역에 있어 북한노동당과 국가가 견지하고 있는 일관된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관철할 수 있도록 무역법의 사명이 규정되었고, 북한식 사회주의의 본성적 요구를 바탕으로 무역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법적 보장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된다.<sup>28)</sup> 무역수지

26) 『민주조선』, 앞의 자료.

27) 『민주조선』, 앞의 자료 참조.

28) 『민주조선』, 앞의 자료 참조.

의 균형을 보장한다는 것은 무역정책에 관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견지하면서 공화국의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을 수입하고, 이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정책”<sup>29)</sup>이라고 한 데서도 잘 이해될 수 있다.

## (2) 무역법의 원칙

무역법은 다음으로, 무역에 관해 지키지 않으면 안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신용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sup>30)</sup>

먼저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한다는 것은 각 부문, 각 단위로 각국과의 무역거래를 다양한 형식,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이며, 신용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수출품목의 질과 납입기일을 보장하고 대금을 적시에 지불한다는 것을 가리키며, 또한 이 원칙은 무역거래를 폭넓게 실행해 제국주의자의 경제봉쇄를 물리치고 사회주의 건설을 강건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sup>31)</sup>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외무역에 있어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가장 큰 약점이 계약, 납기, 품질 등에 관한 신용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북한당국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역을 담당하는 각 주체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가용한 최선의 수단을 동원하여 무역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경제계획법 제32조에서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계획에 예견된 제품을 먼저 생산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하여 무역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우선원칙을 표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 무역에 있어 지키지 않으면 안될 또 하나의 원칙은, 무역을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입각해 실행하고 국가의 수출입허가질서를 지키는 일이다.<sup>32)</sup> 이 원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성적 요구와 자립적

29) 朝鮮問題研究所, 『朝鮮資料』 1999년 5월호, 60면, 북한 무역성 김용문 부상의 인터뷰 답변자료 참조.

30) 『민주조선』, 앞의 자료.

31) 위의 자료.

32) 위의 자료.

민족경제를 견고히 보호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로부터 제기된 원칙이라고 설명된다.<sup>33)</sup>

무역이 인민경제계획에 입각하여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북한경제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계획경제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며, 무역법 제3장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무역계획 또한 인민경제계획의 일부로 되어 있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이미 1995년 2월 대외경제계약법의 채택을 통해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 법 제2조에서는 “대외경제계약에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계약이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의 수출입허가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인민경제계획에 입각해야 한다는 원칙과 마찬가지로 무역이 국가경제 전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무역수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로 보인다. 수출입허가절차에 관하여는 무역법 제4장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수출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무역회사는 수출입허가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수출 또는 수입업무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도 무역에 관한 승인절차가 존재하는데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제5조는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약과 지도는 지대의 시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가 한다”고 하고, 제7조에서는 “공장, 기업소에서 가공무역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가공무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공무역승인신청문건을 지대당국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가공무역에 대한 시행정경제위원회의 승인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처럼 무역법은 무역에 있어 지키지 않으면 안될 원칙을 정확히 규정함으로써 무역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대외적 권위를 높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확고한 보증을 제도화하고 있다.<sup>34)</sup>

33) 『민주조선』, 앞의 자료.

34) 『민주조선』, 앞의 자료 참조.

### (3) 무역법의 요구

무역법은 또, 무역거래 원칙을 구현하는 데 제기되는 요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무역이 통일적으로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응한 지도와 보장을 강화하고, 무역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임과 함께 능력있는 무역 일꾼을 계획적으로 육성하여 무역분야에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발전시키는 일이 법으로 규정된 중요한 요구라는 점을 규정화해 놓고 있다.<sup>35)</sup> 이러한 요구의 규정화에 의해 앞서 제기되었던 무역거래의 원칙, 즉,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신용을 지키는 일, 무역을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입각해 실행하고 국가의 수출입허가질서를 지키는 일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을 재인식시키고 있다. 그리고 무역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인력의 양성,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이해와 교류협력의 필요성 등을 법으로 촉구함으로써 무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 무역성 부상 김용문도 인터뷰에서 “우리의 무역은 자본주의제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곤란한 일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활로를 개척해 나갈 결심이다. 그리고 인재육성 등 중장기적 대책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36)</sup> 대외무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대외경제무역학과를 설치하고, 외국 학자들을 초빙하여 시장경제의 운영에 관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는 등<sup>37)</sup>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도 이 같은 추세의 반영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의해 무역에 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고, 무역을 발전시켜 북한식 사회주의를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법적 보증이 확실히 만들어졌다고 설명된다.<sup>38)</sup>

35) 『민주조선』, 앞의 자료 참조.

36) 朝鮮問題研究所, 『朝鮮資料』 1999년 5월호, 60면 참조.

37) 『경향신문』, 1997년 1월 23일자.

38) 『민주조선』, 앞의 자료 참조.

## 2. 무역회사의 지위와 설립, 관리운영 절차

무역법 제2장은 무역회사의 지위와 설립, 그리고 관리운영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1) 무역회사의 지위

무역법은 무역회사를 수출입활동의 담당자로 하여 그 지위를 규정한다. 무역회사를 수출입활동의 담당자로 하는 것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행하는 무역거래를 자기 소유재산으로 재산을 맞춰 경영활동상의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한다는 것이다.<sup>39)</sup> 이에 따라 무역은 기본적으로 무역회사를 활동주체로 하여 이루어지며, 무역회사는 독립채산제로 하여 경영상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무역회사의 법적 지위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됨으로써 무역회사의 역할을 높이고, 대외무역을 계획적으로 전망성 있게 발전시키는 일이 가능토록 보증이 이루어졌다고 설명된다.<sup>40)</sup>

### (2) 무역회사의 설립과 관리운영 절차

무역법 제2장에서는 또, 무역회사의 설립과 관리운영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무역회사의 설립제도는 회사의 설립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무역회사의 설립제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무역회사에 관해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일로 설명된다.<sup>41)</sup>

무역법에 의하면 무역회사는 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승인 하에 설립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98년 헌법 개정에 따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정무원 산하 대외경제위원회로부터 내각 산하의 무역성으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무역회사의 설립에 관한 승인기관은 대외경제기관인 내각의 무역성이 가장 주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해당기

39) 『민주조선』, 앞의 자료.

40) 『민주조선』, 앞의 자료 참조.

41) 『민주조선』, 앞의 자료 참조.

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경제기관의 관할권 밖에서 독자적으로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는 무역성을 제외한 내각의 각 성과 각 도(직할시) 등을 들 수 있고, 행정기관 이외의 기관으로는 노동당과 인민무력성<sup>42)</sup>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관들은 북한의 외화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경비와 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여 왔으며, 대외경제기관 이외에 '해당기관'이라는 것을 명기한 것은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무역회사는 "외국과의 상품 수출입거래를 전문으로 담당 수행하는 상업기업소"<sup>43)</sup>라고 정의되고 있다. 북한 민법 제11조제1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민 이외에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즉,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1조제2문에서는 예외적으로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도 또한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있다. 무역회사는 무역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그 설립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이 단지 민법상의 기업소로서 이해되어야 했으나, 무역법의 제정에 따라 무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무역법은 무역회사가 계약을 정확히 체결, 이행하고 해당기관이 그 심의를 책임지고 일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여 무역회사가 무역활동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sup>44)</sup> 따라서 무역회사의 설립에 관한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대외경제기관 및 해당기관은 당해 무역회사의 업무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이고 후견적인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무역계획의 작성

무역법 제3장에서는 무역계획의 작성에 있어 제기되는 원칙적 요구와 그 시행에 관해 제기되는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경제는 생산수단의

42) 과거의 인민무력부가 인민무력성으로 개칭되었다.

43)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572~573면.

44) 『민주조선』, 앞의 자료 참조.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계획경제이며(인민경제계획법 제2조제 1문), 계획화사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문제 중 하나로 간주된다. 무역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요구에 의거 무역활동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야말로 무역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조속히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sup>45)</sup> 그러므로 무역계획도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비준과 시달, 실행과 그 총화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이 정한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무역법은 무역계획을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으로 규정하고 수출계획과 수입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과 수출품, 수출협동품의 생산 계획작성 절차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 있다. 또, 무역화물수송계획을 품종별, 수송수단별, 구간별로 나눠 연간, 분기, 월별로 세우고 무역계획을 해당 계약에 근거해 책임지고 수행하는 일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sup>46)</sup> 무역과 관련해서는 인민경제계획법 제32조제1문에서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계획에 예견된 제품을 먼저 생산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다. 무역계획 및 계약의 이행에 대한 이 같은 관심은 무역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환기시킴과 동시에 납기 등 상거래상의 계약 및 신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북한의 무역계획은 국가계획위원회, 무역성 및 관련부처와 무역회사 등이 참여하여 수립한다. 무역계획의 유형에는 기본무역계획, 연간무역계획 및 수출입실행계획이 있다. 기본무역계획은 경제개발계획의 구성요소로서 각 경제계획기간 단위로 기본경제개발계획을 고려하여 국가계획위원회가 수립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대외무역의 성장률, 수출입의 품목별·지역별 구분, 신용관계 등이 포함된다.<sup>47)</sup>

45) 『민주조선』, 앞의 자료 참조.

46) 『민주조선』, 앞의 자료.

47) 정동윤, 앞의 글, 685~686면 참조. 무역계획의 상세한 내용과 유형에 관하여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무역론』, 1979, 131~142면 참조.

연간무역계획은 기본무역계획을 연도별로 구체화한 총괄계획으로서 기본무역계획의 틀 안에서 전년도 실적과 중간계획목표를 참작하여 무역성이 수립하는 것인데, 무역성은 국가계획위원회, 무역은행, 수출품의 최종 수요기관, 수출품생산기업 및 무역회사 등과 협의조정을 거친다. 수출입 실행계획은 연간무역계획을 더 정밀하게 구체화한 계획으로서, 각 무역회사가 각 분기별로 작성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계획기간 중의 총거래금액과 수량, 수입에 필요한 외화금액, 예상수익 등이 표시되며, 국별·품목별·결제방법별로 총괄된다.<sup>48)</sup>

무역계획은 수출계획과 수입계획으로 나누어 수립된다. 수출계획은 상품수출계획과 종합설비수출계획으로 구분되고, 수입계획도 마찬가지로 상품수입계획과 종합설비수입계획으로 나누어진다. 수출계획과 수입계획은 모두 국별·품목별·결제방법별로 수립한다.<sup>49)</sup>

무역계획에 관한 무역법상의 규정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성적 요구에 따라 무역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집행하는 일로서 무역활동을 국가의 통일적 계획 하에 성공적으로 벌일 수 있게 하는 법적 보증이 된다고 한다.<sup>50)</sup>

#### 4. 수출입 질서

무역법 제4장에선 수출입허가기관과 수출입허가질서, 허가를 받은 물자의 반출입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무역법에 의하면 수출입허가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sup>51)</sup> 1998년 9월 헌법 개정에 따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정무원 산하 대외경제위원회로부터 내각 산하의 무역성으로 개편되었으므로, 이 규정의 정무원 대외경제기관도 마찬가지로 내각 산하의 무역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sup>52)</sup>

48) 정동윤, 앞의 글.

49) 정동윤, 앞의 글.

50) 『민주조선』, 앞의 자료 참조.

51) 『민주조선』, 앞의 자료.

52) 북한은 1999년 2월, 외국인투자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했는데, 이 때 외국투자관

그리고 무역법은 내각(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매년 수출입허가지표목록을 작성, 공포하고 그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엄격히 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 수출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sup>53)</sup> 따라서 무역성이 매년 작성, 공포하는 수출입허가지표목록(positive list)에 한해 무역을 할 수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을 실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무역법은 또, 수출입허가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 의하면, 수출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무역회사는 수출입허가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수출 또는 수입업무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sup>54)</sup> 수출입에 관한 엄격한 허가제도는 북한의 무역제도에 있어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가공무역에 관한 허가제도를 살펴보면 무역법상의 수출입허가승인절차에 관한 대체적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에 의하면 공장, 기업소에서 가공무역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가공무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공무역 승인신청문건을 지대당국(무역법의 경우에는 내각 대외경제기관에 해당)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동법 제7조), 가공무역승인신청서에는 신청자명, 가공무역상대편 당사자명, 소재지, 수입하거나 주문자가 제공할 원료, 반제품, 부분품명, 가공자가 가공, 조립할 제품명, 수량, 가공능력, 보장기간, 가공비와 그 지불방법 같은 내용을 밝히고 가공무역계약서사본 또는 수출입계약서 사본, 경제기술타산자료, 가공비계산 기초자료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하며(동법 제8조), 지대당국은 가공무역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검토하고 가공무역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하고, 가공무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가공무역허가증을 발급해주는(동법 제11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런 법규에서 ‘중앙대외경제기관’이라는 명칭이 모두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 수정되었으며, 이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성의 ‘경제협조관리국’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관우, 앞의 자료 참조.

53) 『민주조선』, 앞의 자료.

54) 『민주조선』, 앞의 자료.

또한 무역법에서는 수출입허가를 받은 지표가 변하거나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에 수출입허가를 다시 받는 일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출입허가질서를 세웠더라도 이에 근거한 반출입질서를 세울 수 없다면 수출입물자에 대한 통제를 원만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기간을 정하여 이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55)</sup>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제13조에서도 “가공무역허가증의 유효기간은 가공무역계약기간과 같다. 가공무역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다 되었거나 가공무역허가증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안으로 취소 등록을 하고 가공무역허가증을 바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무역법은 내각(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해당문서와 계약서를 검토하고 반출입승인을 시행하는 제도를 규정하여 수출입물자에 대한 국가의 지도통제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56)</sup>

## 5. 지도통제

무역법 제5장에서는 무역사업의 지도통제에 제기되는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무역법은 무역사업에 관한 국가의 지도체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내각(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로 하여금 수출품의 비중을 높이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무역을 확대 발전시키는 일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기관이 무역사업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는 일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무역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규정하고 있다.<sup>57)</sup>

무역법 제1장 내지 제4장에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역은 인민경제의 중요한 부문 중의 하나로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 밑에서 계획, 집행되어야 하며, 또한 내각 대외경제기관인 무역성 및 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해당기관들의 지도와 감독 아래 무역사업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5장에서 무역사업에 관한 지도통제에 관한 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5) 『민주조선』, 앞의 자료 참조.

56) 『민주조선』, 앞의 자료 참조.

57) 『민주조선』, 앞의 자료 참조.

따라서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무역계획도 인민경제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인민경제계획법』 제6장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무역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며, 국가는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는 점이 천명되었을 것이며, 또한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통제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내각 대외경제기관이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3> 무역법 각 장별 내용 요약<sup>58)</sup>

구 분	내 용
제1장 무역법의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법의 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제도와 질서 확립</li> <li>- 대외시장 확대 및 무역수지 균형 보장</li> <li>- 인민경제발전에 공헌</li> </ul> </li> <li>○ 무역법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추구</li> <li>- 수출품의 품질과 납기일 보장, 대금 즉시지불 등 신용 확립</li> <li>- 사회주의계획경제에 입각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 고수</li> </ul> </li> </ul>
제2장 무역회사의 지위와 설립, 관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회사의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 활동의 담당자</li> <li>- 독립채산제 하에 경영활동의 책임 부여</li> </ul> </li> <li>○ 무역회사의 설립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승인 하에 설립</li> <li>- 승인기관이 심의의 책임을 짐</li> </ul> </li> </ul>
제3장 무역계획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에 의한 무역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종별, 수송수단별, 구간별, 수출 및 수입계획 수립</li> <li>- 연간, 분기, 월별 무역계획 작성</li> </ul> </li> </ul>
제4장 수출입 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허가기관 지정: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서 및 해당문서 검토후 승인여부 결정</li> <li>- 승인연장 및 변경절차 관할</li> </ul> </li> <li>○ 수출입허가질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매년 수출입허가지표목록 작성, 공포</li> <li>- 무역회사는 수출입허가승인신청서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수출입 업무 수행</li> </ul> </li> </ul>
제5장 지도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체계 규정</li> </ul>

5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무역법 해설”, 『북한뉴스레터』 1998년 5월호, 14~16면 참조.

## 6. 중국 대외무역법과의 비교 · 검토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1994년 5월 1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북한의 무역법보다는 약 4년 먼저 채택된 셈이다.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총 8장 44개조로 구성되어 있어, 총 5장 58개조로 알려진 북한 무역법보다는 조문의 수가 적은 셈이다.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은 대체로 중국을 모델로 하여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경제개방과 관련된 법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법제 정비에 뒤이어 도입되는 경향<sup>59)</sup>을 보여 왔다. 따라서 북한 무역법의 정확한 조문이 밝혀지지 않은 지금, 중국의 『대외무역법』의 내용을 검토해 봄으로써 보다 북한 무역법의 실체에 보다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sup>60)</sup>

## (1) 무역법의 목적

무역법의 목적에 관하여 중국은 “대외무역의 발전과 대외무역질서의 유지보호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제1조)을 들고 있는 반면, 북한은 “무역에 있어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대외무역의 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있어서는 일치하지만, 북한이 대외무역에 있어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움을 강조함으로써 단순히 대외무역질서의 유지보호를 규정한 중국보다 무역에 대한 국가의 지

59)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중국의 『중외합작경영기업법』(1979. 7. 1), 『중외합작경영기업법』(1988. 4. 13), 『외자기업법』(1986. 4. 12)이 각각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제정된 데 이어 북한에서는 1990년대 초에 『합영법』(1994. 1. 20), 『합작법』(1992. 10. 5), 『외국인기업법』(1992. 10. 5) 등이 제정되었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개방법제의 내용상 비교에 관하여는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Ⅲ)』, 1997, 345~352면 참조.

60) 북한 무역법의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간의 비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두며, 단지 북한 무역법의 실체를 유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특기해 둔다.

도와 통제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들고 있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는 그 지향점이 엄밀히 구분되지만, 북한의 무역법이 전반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또는 통제경제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또한 북한의 무역법은 중국과는 달리<sup>61)</sup> 목적에서 무역수지의 균형 보장에 관한 언급을 함으로써 대외무역에 있어서도 인민경제계획에 의한 무역계획, 무역에 관한 허가, 국가의 엄격한 지도 및 통제 등에 관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 (2) 무역법의 원칙

무역법의 기본 원칙으로 북한은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신용을 지키는 일”과 “무역을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입각해 실행하고 국가의 수출입허가질서를 지키는 일”을 들고 있고, 중국은 “국가는 통일적 대외무역 제도를 실행하고 법에 의하여 공평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유지보호”(제4조제1문)하는 일과 “국가는 대외무역을 장려하고 지방의 무역발전의 욕을 고취하며, 대외무역사업자의 자주권을 보장”(제4조제2문)하는 일, 그리고 “대외무역사업자는 대외무역사업활동에 있어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품질을 보증하고, 애프터서비스에 충실”(제12조)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을 들 수 있다.

먼저, 무역에 있어 계약의 이행 등에 관한 국제적 신용질서를 중시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이 인민경제계획과 수출입허가질서를 강조한 반면, 중국은 공평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의 유지보호와 대외무역사업자의 자주권을 보장함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이 양국의 무역법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

61) 중국은 물품이나 기술이 “국가의 국제금융의 위상과 국제수지평형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제16조제6호)나, “국가외환수지 균형 유지”(제24조제4호)를 위해 국제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경우 등 개별적으로 수출입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외무역 전반에 관해 일반적으로 무역수지의 형평을 고려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3) 무역법의 요구

무역법의 일반적인 요구로 북한은 “무역이 통일적으로 균형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응한 지도와 보장을 강화하고, 무역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임과 함께 능력있는 무역 일꾼을 계획적으로 육성하여 무역분야에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발전시키는 일”을 들고 있으나, 중국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타국가 및 지구와의 무역관계를 촉진, 발전”(제5조)시키는 일,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대외무역관련 국제조약, 협정의 체결국이나 참가국에게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최혜국대우 및 최혜국 국민대우”(제6조)를 부여하는 일, 그리고 “어떠한 국가나 지구가 무역부문에서 중국에 대하여 차별적인 금지, 제한 및 유사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국가나 지구에 상응 조치”(제7조)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무역분야에서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강조한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거나, 그 외에 북한이 대체로 무역의 균형을 위한 지도와 보장, 무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인력 양성 등 대내적인 사항을 주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국가간의 최혜국대우 및 무역 제재 등에 관한 대외적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4) 무역회사의 법률관계

무역회사의 지위에 관하여 북한은 “무역회사는 수출입활동의 담당자”로서 “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승인 하에 설립”되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행하는 무역거래를 자기소유재산으로 채산을 맞춰 경영활동상의 책임을 지는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무역법은 “회사의 설립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제도”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대외무역사업자라 함은 대외무역사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제8조)으로 “물품 및 기술수출입의 대외무역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5개항의 조건을 갖추고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의 허가”(제9조)를 얻어야 하며,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윤과 결손을 책임”(제11조)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무역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기 위한 무역회사를 무역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중국은 회사의 설립은 회사법<sup>62)</sup> 등 일반법에 의하여 설립된다는 기초 위에서, 그러한 법인 또는 조직의 대외무역사업활동에 대한 영업허가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즉, 북한에서 회사는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상 필요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sup>63)</sup>

#### (5) 무역계획

북한의 무역법은 무역계획을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으로 취급하여, “수출계획과 수입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과 수출품, 수출협동품의 생산계획절차를 규정”하며, “무역화물수송계획을 품종별, 수송수단별, 구간별로 나눠 연간, 분기, 월별로 작성”하고, 무역계획은 “해당 계약에 근거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국 무역법의 경우에는 무역계획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중국의 무역법은 반면에 “국가는 통일적인 대외무역제도를 실행하고 법에 의하여 공평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유지보호”(제4조)한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 입각하고 있는 북한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6) 수출입의 허가

북한은 수출입허가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시행하고,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매년 수출입허가지표목록을 작성, 공포하고 그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엄격히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국가는 물품 및 기

---

62) 중국의 경우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이 새로운 중국의 회사법이며, 회사의 설립, 조직, 운영, 해산 및 대내외적 관계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崔勤之, “중국의 시장경제법률제도의 확립과 정비”, 『법제연구』 제19호, 2000. 11, 206면 참조.

63) 이에 관하여 상세히는 박정원, 『북한법률용어의 분석(IV)』, 한국법제연구원, 1998, 24~25면 참조.

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락”(제15조)하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 문은 국무원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제한 혹은 금지수출입품목이나 기술목 록을 제정·조정·공고”(제18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도와 매년 수출입허가목록을 공포 하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중국 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의 자유를 인정하며,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품목을 공고하는 네가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규정하여 대외무역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7) 무역질서

수출입 질서에 관하여 북한은 “무역회사는 수출입허가승인신청서를 제 출하고 승인을 받아 수출 또는 수입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고, “수출입허 가를 받은 지표가 변하거나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수출입허가를 다시 받 도록”하며, 반출입에 관하여도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해당문서와 계약 서를 검토하고 반출입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어 수출입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지도와 통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물품의 수출이나 수입제한에는 쿼터관리나 허가증관리 를 하고, 기술의 수출이나 수입제한에는 허가증관리”(제19조제1문)를 하 도록 하고 있어, 수출입 제한품목이 아닌 한은 특별한 허가절차나 제한 이 없이 일반적인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 (8) 무역사업의 지도통제

북한의 무역법은 무역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체제를 명확히 하고, “정 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로 하여금 수출품의 비중을 높이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무역을 확대, 발전시키는 일”과 “해당기 관이 무역사업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를 적시에 정확히 시행하는 일”을 지도통제하도록 하고 정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무역법은 “대외무역사업자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 문의 규정에 따라 유관부문에 대외무역사업활동 관련문서 및 자료를 제

출”(제14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관리규정을 두고, 그 외 무역사업에 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수출입 금지 혹은 제한 물품의 밀수(제38조), 수출입 원산지증명, 수출입허가증의 위·변조(제39조)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및 대외무역사업허가 취소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다.

#### (9) 기타 검토사항

앞에서의 검토를 통해 북한의 무역법은 중국의 무역법과는 달리 사회주의 계획경제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통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북한의 무역법 해설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sup>64)</sup> 중국 무역법에는 규정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간의 무역상 우대조치 및 무역제재에 관한 사항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 무역법은 국가간의 최혜국대우(제6조) 및 무역제재(제7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 무역대리제도에 관한 사항이다. 중국의 무역법은 “대외무역사업허가가 없는 조직이나 개인은 국내의 대외무역사업자에게 사업범위 내에서 무역업무를 위탁”(제13조제1문)할 수 있는 무역대리제도를 두고 있다.

셋째, 국제서비스무역에 관한 사항이다. 중국은 대외무역의 정의에서부터 “대외무역이라 함은 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과 국제서비스무역을 지칭한다”(제2조)고 하여 국제서비스무역을 대외무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sup>65)</sup> 특별히 제10조 및 제4장(5개 조문)에서 국제서비스무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

넷째, 수출입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중국의 무역법은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공공이익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이나 수입의

64) 북한의 무역법에 관하여 현재 소개되고 있는 내용에 언급이 없다는 것이며, 북한 무역법의 정확한 조문에는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65)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이라 함은 물품의 수출·수입을 말한다”(제2조제1호)고 규정하고 있고, “물품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증권 및 채권을 화폐한 서류외의 동산을 말한다”(제2조제2호)고 정하여 중국의 무역개념보다 좁게 정의하고 있다.

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 7개호의 수출입 제한규정(제16조)과 “국가안전이나 사회 공공이익에 위해가 되는 경우” 등 4개호의 수출입 금지규정(제17조)을 두고 있다.

다섯째, 대외무역사업에 있어 공정한 경쟁 및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이다. 중국의 무역법은 법에 따른 사업과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고, “수출입 원산지증명, 수출입허가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매매하는 행위” 등 5개호의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제27조)을 두고 있다.

여섯째, 국내산업 보호, 즉, 세이프가드(safeguards)<sup>66)</sup>에 관한 사항이다. 중국의 무역법은 “수입상품의 수량증가에 따라 국내의 동일상품이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가 심각한 손해나 손해의 위협이 있을 시 국가는 필요한 보장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손해나 손해의 위협을 해소하거나 경감”(제29조)할 수 있고,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될 시 이로 인해 국내에 이미 육성된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거나 실질적인 손해의 위협 혹은 관련산업 조성에 실질적인 장애가 될 경우, 국가는 필요조치를 취해 손해, 손해위험, 장애를 제거하거나 경감”(제30조)할 수 있으며, “상품수출국이 수입상품에 대하여 형태를 불문하고 직접 혹은 간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내에 이미 육성중인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나 손해의 위협 혹은 장애를 초래할 경우 국가는 필요조치를 통해 이러한 손해나 손해의 위협, 장애를 제거, 경감”(제31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국내산업 보호에 관한 규정은 대외무역에 대해 엄격한 허가제도와 국가의 지도·통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무역법에 있어서는 특별히 규정해야 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대외무역의 촉진에 관한 사항이다. 중국의 무역법은 “국가는 대외무역 발전수요에 따라 대외무역서비스를 위한 금융기구, 대외무역발전기금, 위험기금을 조성”(제33조)하도록 하고, “국가는 수출입신용대출,

66) 세이프가드(safeguards)는 원래 보호(保護)·방호(防護)·예방·보증·호위라는 뜻으로, 특정물품의 수입량이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동종 또는 직접 경쟁상태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또는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수입품이 시장교란(市場攪亂)을 일으킬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하며, 흔히 긴급수입제한조치(緊急輸入制限措置)라고 번역한다.

수출관련 환급세금 및 기타 무역촉진조치를 취하여 대외무역을 발전”(제34조)시키며, “대외무역사업자는 법에 따라 수출입상회<sup>67)</sup>를 설립하거나 참여”(제35조)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 국제무역촉진조직은 정관에 따라 대외무역연락업무, 전람회 개최, 정보 제공, 자문서비스와 기타 대외무역 촉진활동”(제36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여덟째, 위법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이다. 중국의 무역법은 수출입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38조), 수출입 원산지증명, 수출입허가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매매한 경우(제39조), 금지·제한된 기술을 수출입한 경우(제40조), 그리고 국가대외무역직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제41조) 등에 관한 처벌 또는 행정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홉째, 대만 즉, 양안관계를 고려한 사항에 관한 것이다. 중국의 무역법에는 제5조, 제7조, 제16조제3호, 제37조 등의 조항에 외국 이외에 ‘지구(地區)’라는 용어를 추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대만에 대해서도 대외 무역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

67) 수출입상회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무역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합조직으로서 정관에 따라 회원간의 상호 업무협조와 기업을 위한 각종 서비스제공을 통해 대외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lt;표4&gt; 북한과 중국의 무역법 주요 내용 비교

항목	북한 무역법 (1998. 3)	중국 대외무역법 (1994. 5. 12)
구성	- 총 5장 58개조	- 총 8장 44개조
무역법의 목적	- 무역에 있어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	- 대외무역의 발전과 대외무역질서의 유지보호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제1조)
무역법의 원칙	-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신용을 지키는 일 - 무역을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입각해 실행하고 국가의 수출입허가질서를 지키는 일	- 국가는 통일적 대외무역제도를 실행하고 법에 의하여 공평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유지보호(제4조제1문) - 국가는 대외무역을 장려하고 지방의 무역발전의욕을 고취하며, 대외무역사업자의 자주권을 보장(제4조제2문) - 대외무역사업자는 대외무역사업 활동에 있어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품질을 보증하고, 애프터서비스에 충실해야 함(제12조)
무역법의 요구	- 무역이 통일적으로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응한 지도와 보장을 강화하고, 무역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임과 함께 능력있는 무역 일꾼을 계획적으로 육성하여 무역분야에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발전시키는 일	-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타 국가 및 지구와의 무역관계를 촉진, 발전(제5조) -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대외무역관련 국제조약, 협정의 체결국이나 참가국에게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최혜국대우 및 최혜국 국민대우 부여(제6조) - 어떠한 국가나 지구가 무역부문에서 중국에 대하여 차별적인 금지, 제한 및 유사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국가나 지구에 상응 조치(제7조)
무역회사의 지위	- 무역회사는 수출입활동의 담당자 -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행하는 무역거래를 자기소유재산으로 채산을 맞춰 경영활동상의 책임을 지는 당사자	- 대외무역사업자라 함은 대외무역사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제8조) - 대외무역사업자는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윤과 결손을 책임짐(제11조)

제 3 장 북한 무역제도의 주요 내용 및 분석

항목	북한 무역법 (1998. 3)	중국 대외무역법 (1994. 5. 12)
무역회사의 설립과 관리운영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의 설립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제도</li> <li>- 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승인하에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 및 기술수출입의 대외무역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5개 항의 조건을 갖추고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의 허가를 얻어야 함(제9조)</li> </ul>
무역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li> </ul>	
무역계획 작성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계획과 수입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과 수출품, 수출협동품의 생산계획절차를 규정</li> <li>- 무역화물수송계획을 품종별, 수송수단별, 구간별로 나눠 연간, 분기, 월별로 작성</li> <li>- 무역계획을 해당 계약에 근거해 책임지고 수행</li> </ul>	
수출입 허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허가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시행</li> <li>-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매년 수출입허가지표목록을 작성, 공포하고 그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엄격히 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는 물품 및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락(제15조)</li> <li>-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은 국무원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제한 혹은 금지수출입품목이나 기술목록을 제정·조정·공고(제18조)</li> </ul>
수출입 허가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회사는 수출입허가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수출 또는 수입업무를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의 수출이나 수입제한에는 쿼터관리나 허가증관리를 하고, 기술의 수출이나 수입제한에는 허가증관리를 함(제19조제1문)</li> </ul>
수출입허가의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허가를 받은 지표가 변하거나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수출입허가를 다시 받도록 함</li> </ul>	
반출입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해당문서와 계약서를 검토하고 반출입승인</li> </ul>	
무역사업의 지도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체제</li> <li>-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로 하여금 수출품의 비중을 높이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무역을 확대, 발전시키는 일</li> <li>- 해당기관이 무역사업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를 적시에 정확히 시행하는 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무역사업자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유관부문에 대외무역사업활동 관련문서 및 자료를 제출(제14조)</li> <li>- 수출입 금지 혹은 제한 물품의 밀수(제38조), 수출입 원산지증명, 수출입허가증의 위·변조(제39조)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대외무역사업허가 취소 등</li> </ul>



## 제 2 절 통관 및 관세제도

북한의 관세제도는 1948년 10월 26일 내각결정 제49호로 채택된 『수출입세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1993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이 채택됨으로써 통관 및 관세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세관법을 중심으로 대외무역과 관련한 북한의 통관 및 관세제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세관법의 기본

세관법의 목적은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관세를 정확히 적용하여 대외무역에서 규율과 질서를 세우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제1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토대로 한 계획경제의 원칙은 여기서도 관철된다.

그리고 “국가는 수입과 수출을 장려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낮게 적용하며 수입과 수출을 제한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높게 적용”(제4조)하도록 규정하여, 대외무역을 장려하는 한편, 수출입제한물품에 대한 고율관세 적용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북한관세제도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관세가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무역이 국가계획 및 독점 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부과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며, 실제로 무역상품에 대한 관세는 대부분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교역품(무환수입품, 외국여행자의 소지품, 국제소포 등)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관세는 수출입의 통관업무를 통한 밀수 방지, 외환독점, 상품의 수출입 통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이 위주가 되어 있다.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세관지도기관이 통일적”(제5조)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 관세에 관련되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세관

관리총국, 세관 및 세관검사국 등이 있다. 세관관리총국은 과거 무역부 산하기구로서 관세에 관련된 제 기관을 통할하며, 관세 제 기관의 조직 관리와 관세정책의 입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sup>68)</sup> 세관은 관세관리총국의 지도 아래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화물의 적법성을 검사하고, 과세금액의 산정과 징수, 불법 수출입화물의 단속 등의 기능을 가진다. 세관검사국은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와 징수를 담당한다.

## 2. 세관수속

북한의 세관수속은 짐과 운수수단을 반입 또는 반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수속에 필요한 문건을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제8조)하고 있다.

북한의 “국경역, 무역항을 거쳐 다른 나라에 중계수송하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과 그와 관련한 세관요금의 납부는 그 짐을 맡아 중계수송하는 기관”이 하도록 하고, 북한에 반입할 수 있는 물자를 중계수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내각(정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10조).

그리고 북한의 “무역항을 거쳐가는 다른 나라 배에 실려있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은 그 배의 선장”이 하며, 선장은 배짐명세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제11조).

## 3. 세관검사

세관은 북한에 들여오거나 외국으로 내보내는 짐과 운수수단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짐과 운수수단은 들여오거나 내보낼 수 없도록 규정(제13조)하고 있으며, 세관검사는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제우편국과 그 밖의 지정된 곳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또한 세관은 국경역, 무역항 같은 세관검사지점에서 검사할

---

68) 1998년 대외무역관련조직의 개편 후 관세관리총국은 무역성 산하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수 없는 짐에 대하여서는 짐 도착지의 해당 기관에 세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제15조), 이 경우 짐입자는 도착지의 해당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북한의 수출입상품에 대해서는 과거 대외경제위원회 산하 대외상품검사위원회가 공적인 검사기관으로서 검사,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1998년의 대외무역조직 개편 이후에는 무역성 산하에 소속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외상품검사위원회는 남포, 해주, 홍남, 원산, 청진, 나진, 송림 등 주요 항구에 지국을 운영하고 있다.

제17조에서는 “세관은 국가무역계획에 없거나 수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물자를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엄격히 단속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무역계획 및 수출입허가절차 준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통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세관은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설치된 국가품질감독기관, 검역기관을 비롯한 해당 전문검사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술감정을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그리고 북한의 “무역기관과 합의 없이 국경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들어온 다른 나라의 짐은 세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역할 수 있다(제20조).

#### 4. 관세

세관은 관세를 정확히 물리고 그 납부정형을 장악통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세납부와 관련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문건을 조사할 수 있다(제31조).

관세를 물리는 기준가격은 수입물자인 경우에는 국경도착가격, 수출물자인 경우에는 국경인도가격으로 하며, 수출입물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매가격으로 한다(제32조). 그리고 관세률은 내각(정무원)이 정한다.

관세의 계산은 해당 물자가 수출 또는 수입되는 당시의 관세율에 따라 북한의 원화(조선원)로 한다(제33조).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의

화관리기관이 발표하는 해당 시기의 외화환산율에 따라 한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와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제34조).<sup>69)</sup> 하지만 관세를 면제받는 경우라도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북한영역에 판매하는 경우,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온 물자를 북한영역에 판매하는 경우, 보세물자를 정해진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5조).

북한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무역협정에 관세특혜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혜관세율을 적용하고, 관세특혜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관세율을 적용하며, 무역협정에 관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37조). 관세율이 정해져 있지 않는 물자에는 그와 유사한 물자의 관세율을 적용한다(제38조).

관세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세관이 발급한 관세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으로 해당 은행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관이 직접 받아 은행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9조).

보세기간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으며, 보세기간은 보세공장, 보세창고에서는 2년으로 하고, 보세전시장에서는 세관이 정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5조).

## 5. 제재 및 신고청원

“세관은 정해진 기간 안에 관세를 물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매일 연체료를 물린다”(제48조제1문)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

69) 세관법 제34조 각호에 의해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나라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보내온 선물
2.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여행자의 휴대품
3. 외국투자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와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
4.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게 되어있는 물자
6. 국가가 따로 정한 물자

관세납부통지서를 내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관세를 물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와 연체료에 맞먹는 물자를 관세와 연체료로 처리하거나 해당 은행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돈자리(계좌)에서 관세와 연체료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8조제2문).

그리고 세관법규를 어기고 북한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짐과 운수수단은 억류 또는 몰수하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제49조).

세관 수속과 검사, 관세납부와 관련한 의견 상이는 해당 세관과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상급세관에 신소청원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제50조). 신소청원을 받은 상급세관은 그것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0조제3문). 이러한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를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51조).

### 제 3 절 대외거래상 외환관리제도

북한의 외환관리에 관하여는 1985년 합영법시행세칙 제7장 제45조 내지 제52조까지 8개 조문이 있었으나,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포괄적인 단행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이 채택되었고, 1999년 2월 26일 일부조항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외화관리법시행규정』이 정무원 결정으로 1994년 6월 27일 제정되었다. 북한의 외환관리제도는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외화를 수급계획에 의해 장악, 관리하는 외화집중관리제도와, 또한 외화거래, 저금, 예금, 저당 등은 외국환자은행으로만 제한되는 외국환업무 전문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외화관리기관이 환율을 결정하며, 결제통화도 지정하는 등 외화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여기서는 외화관리법(이하 이 절에서 ‘법’이라 함)과 외화관리법시행규정(이하 이 절에서 ‘시행규정’이라 함)을 중심으로 하여 대외거래와 관련한 북한의 외환관리제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외화관리법의 적용범위

외화관리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과 외화현금, 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외화의 종류에는 전환성있는 외국화폐, 국가채권, 전환가능회사채권을 비롯한 외화유가증권, 수형(어음), 행표(수표), 양도성예금증서를 비롯한 외화지불수단, 기타 외화자금과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과 국제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 같은 귀금속이 속한다(법 제3조).

시행규정 제4조에서는 외화의 종류를 전환성있는 외화와 전환성이 없는 외화로 나누어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전환성있는 외화에는 임의의 시기와 장소에서 다른 나라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은행권, 보조화폐), 외화유가 증권(외화로 표시된 국가채권, 지방채권, 회사채권, 출자증권, 주권과 같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증권), 외화지불수단(외화로 표시된 수형, 행표, 여행신용장, 송금증서, 지불지시서)과 기타 외화자금(전환성 외화돈자리와 국제결제계산단위로 표시된 돈자리의 금액), 귀금속(장식품을 제외한 금, 은, 백금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이 속한다. 전환성이 없는 외화에는 임의의 시기와 장소에서 다른 나라의 돈과 바꿀 수 없는 민족화폐와 민족화폐로 표시된 돈자리의 금액이 속한다.

외화관리법은 외화를 이용하는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하며, 또한 북한영역 안에서 외화를 이용하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가, 외국인과 조선동포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 이에 따르면 북한영역 안에서 외화를 사용하는 한국인도 적용을 받게 된다. 외국기관에는 대사관, 영사관, 무역 및 국제기구 대표부 같은 것이 포함되며 외국투자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외국기업이 포함된다(시행규정 제3조제2문).

북한에서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전문은행은 무역은행이며,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업무를 맡아할 수 있다(법 제5조).

현재 북한의 외국환자업무는 무역은행 이외에 조선대성은행, 창광신용은행, 고려상업은행, 조선합영은행, 황금의 삼각주은행과, 외국투자은행은 아이엔취(ING)-동북아은행, 페레그린-대성은행 등이 외국환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들간에 맺은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에 따르는 은행들간의 지불협정은 무역은행이 맺는다(시행규정 제8조).

그리고 조선원<sup>70)</sup>의 외국환자시세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법 제7조). 북한과 다른 나라 사이에 결제할 수 있는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하며,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외화가 아닌 다른 외화로도 결제할 수 있다(법 제8조).

## 2. 대외거래상 외화의 이용

외화는 무역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 무역 밖의 거래, 은행에서 조선원을 사거나 파는 거래, 자본거래 등에 이용할 수 있다(법 제11조).<sup>71)</sup> 그리고 대외경제거래에 따르는 결제는 송금, 대금청구, 지불위탁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법 제12조). 경제거래에 따르는 자금결제는 거래은행에 개설된 조선원 또는 외화원, 외화돈자리를 통하여 무현금으로 한다(시행규정 제16조).<sup>72)</sup>

70) 북한은 화폐를 북한원(조선원), 외화원(외화와 바꾼 북한원) 및 외화로 구분한다.

71) 시행규정 제15조에서는 외화는 무역거래, 무역밖의 거래, 자본거래, 외화를 사거나 파는 것과 같은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범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무역거래에는 상품의 수출입과 그와 직접 관계되는 거래가 포함된다. 무역 밖의 거래에는 여비 또는 이자, 배당금, 경비, 유지비와 같은 지불거래, 봉사제공과 관련한 거래, 증여, 상속, 보증과 관련한 거래 같은 것이 포함된다. 자본거래에는 예금, 신탁, 대부, 채무보증, 외화지불수단 또는 채권의 매매, 증권의 발행 또는 취득, 부동산취득 같은 거래가 포함된다.

72) 시행규정 제16조 제2문 이하에서는 조선원돈자리, 외화원돈자리, 외화돈자리의 성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조선원돈자리에는 북한영역 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조선원을 넣으며, 이 돈자리에 있는 돈은 외화로 전환할 수 없다. 외화원돈자리에는 전환성외화를 조선 원으로 전환한 돈을 넣으며, 이 돈자리에 있는 돈은 임의의 시기에 요구하는 외화로 전환할 수 있다. 외화돈자리에는 지정된 외화를 화폐별로 넣을 수 있으며, 이 돈자리에 있는 돈은 임의의 시기에 요구하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 또는 외화로 지불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원, 외화원, 외화돈자리의 잔고에 대하여서는 이자를 계산하여 주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되는 외화를 조선원으로 바꾸어 자기 구좌에 넣어야 하며,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지표와 항목에만 써야 한다(법 제13조).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외화를 받아쓰는 기관, 기업소는 외화를 쓰려고 할 경우 외화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자체의 외화수입으로 계획에 예견된 외화지출을 보장하게 되어있는 기관, 기업소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자기가 번 외화범위 안에서 해당 거래 은행을 통해서 외화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외화 이용에 관해 다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거래에서 생기는 재계산차액, 거래잔액, 수수료, 체선료, 위약금, 해약금과 같은 외화수입금을 그 수입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으로 거래 은행에 넣어야 한다(시행규정 제29조). 또한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에서 벌었거나 쓰다 남은 외화 가운데서 전환성외화는 거래은행에 넣으며, 비전환성외화는 해당 나라에 있는 북한의 대표기관에 맡기고 그 보관증을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시행규정 제30조). 대표기관에 맡긴 보관증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쓸 수 있다.

외국인은 국외로부터 송금하여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북한의 은행에 예금하거나 팔 수 있다(법 제16조).

북한영역 안에 상주하는 다른 나라의 대사관, 영사관, 무역대표부 같은 외국기관은 무역은행에 구좌를 두어야 한다(법 제18조제1문).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아래 북한의 은행에 구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아래 다른 나라 은행에도 구좌를 둘 수 있다(법 제18조제2문 및 제3문).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아래 비거주자들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할 수 있다(법 제19조).

외화 이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외화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하며, 외화를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연간 외화재정상태표를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하도록 되어 있어(법 제21조), 외화관리에 대단히 엄격함을 알 수 있다.



### 3. 외화의 반출입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 없이 북한에 들여올 수 있으나(법 제22조), 외화현금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증명문건이나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에 밝힌 금액범위 안에서만 북한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법 제23조). 외화유가증권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북한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으나,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내갈 수 있다(법 제24조). 귀금속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북한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으며, 입국할 때 들여왔던 귀금속은 세관에 신고한 범위 안에서만 내갈 수 있다(법 제26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을 해당한 문건이나 세관신고서 없이 북한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법 제25조).

또한 외국투자자는 북한영역 밖으로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금을 세금 없이<sup>73)</sup>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 자본을 제한 없이 이전할 수 있다(법 제27조).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노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를 북한영역 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다(법 제28조).

### 4. 외환관리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

북한은 외환관리질서를 위반한 경우를 대비하여 외화관리법과 그 시행규정에서 제재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북한의 다른 법령들이 상벌규정이 대체로 미흡하고 절차적 규범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73) 여기서 말하는 ‘세금 없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견해가 있다. 즉, 외국 투자자가 하더라도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등의 규정에 의거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거래세, 재산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동윤, 앞의 글, 683면 참조. 이에 대하여 시행규정 제48조에서도 “외국투자자는 기업을 하여 얻은 리윤과 소득금,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공화국령역밖으로 세금없이 내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세금은 기업 또는 개인활동에 따른 세금이 아니라 외화의 반출에 따른 별도의 세금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는 달리 대단히 구체성을 띠고 있어서 외화에 대한 관리와 통제의 정도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

외화관리질서를 어긴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리고 비법적으로 거래한 외화와 물건을 몰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법 제29조).<sup>74)</sup>

외화관리질서를 어겨 외화적 손해를 준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외화로 보상시킬 수 있다(법 제30조). 시행규정 제58조에서는 이에 부가적으로 손해액의 50%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다.<sup>75)</sup>

또한 이 법을 어겨 입증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꾼과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법 제31조).

## 제 4 절 기타 무역관련제도

### 1. 대외무역상의 결제제도

북한은 지금까지 대사회주의국가에 대한 결제방법은 상호간에 체결된 장기무역협정과 이에 따라 매년 체결하는 무역의정서에 의한 청산결제방법을 원칙으로 해 왔다. 잔액청산은 채무국의 결제통화에 의해 지불하는

74) 외화관리질서 위반에 대해 시행규정 제57조에서 규정한 제재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받은 업종 밖의 외국환자업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얻은 영업수익금을 몰수 하거나 5,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외화결제, 외화대부, 외화양도 질서를 어겼을 경우와 국가가 정한 질서 밖에서 외화현금으로 물자를 거래하였을 경우에는 결제 또는 대부, 양도한 외화와 거래한 물자를 몰수하거나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외화를 밀매하였을 경우에는 밀매한 금액을 몰수한다.
4.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외화를 예금 또는 보관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10일 안으로 몰수하여 국가에 바치며 해당 예금 또는 보관액의 50%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이밖의 외화관리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 조의 유사한 위반행위에 따라 한다.

75) 북한의 법체계에 있어서는 법률과 시행규정의 계층적 질서가 엄밀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규정에서 법률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혀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것이 보통이나 상품의 추가인도나 금을 송부하기도 한다. 모든 대외결제(차관결제, 비상업적 지불결제 등 무역외결제를 포함)는 원칙적으로 구소련의 루블화를 결제통화로 하여 쌍방의 중앙은행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1991년 이후 구소련의 해체와 러시아연방의 성립과 함께 국제통화를 결제통화로 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국제거래상의 일반적인 결제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sup>76)</sup>

대자본주의국가에 대한 결제방식은 청산지불협정을 거의 맺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업신용장(Commercial L/C)을 기초로 행해지는 무역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즉, 북한의 무역은행과 코레스계약(correspondent arrangement)<sup>77)</sup>을 맺고 있는 수출입국측 코레스은행을 통지은행으로 하고, 결제는 북한의 은행과 런던, 홍콩, 추리히 등지의 제3국 은행간에 미리 지정된 통화로 이루어진다.

대외무역에 있어 결제를 담당하는 은행으로는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 산하에 무역은행, 금강은행, 대성은행, 조선합영은행 등이 있다.

무역은행은 무역결제업무, 지불 및 보증업무, 무역거래의 외화획득과 지불에 대한 신용업무 등을 취급한다. 또한 쌍방지불협정을 맺고 있지 않은 서방국 및 개도국들과의 무역결제를 담당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각국과 코레스계약을 맺고 있다.<sup>78)</sup> 외화관리법 제5조에서도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전문은행은 무역은행이라고 명시하고, 다만,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업무를 맡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강은행은 1978년 9월에 무역확대에 따른 경제업무증대를 전담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으며, 기계제품, 금속제품, 광물, 화학제품 등을 수출입하는 조선봉화무역상사 등의 수출입에 따른 대외결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성은행은 금강은행과 같은 목적으로 1978년 11월 설립되어 주로 조선대성무역상사, 조선해동해운회사, 조선만경무역상사 등의 수출입에 따

76) 강정모, 『북한의 무역 및 대외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2, 18면 참조.

77) 코레스계약이란 국제간의 외환결제를 하기 위하여 자국환은행과 거래은행인 외국 환은행 사이에 상호간에 결제자금을 예치하고 고객들의 수출입거래를 결제하도록 하는 환거래계약을 말하며, 이 때의 거래은행을 코레스은행이라고 한다.

78) 강정모, 앞의 책, 15~16면 참조.

른 대외결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선합영은행(Korea Joint Bank)은 북한과 조총련과의 합영사업이 1989년도에 20여개 기업으로 확대되어 합영회사 금융업무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총련과 합작하여 1989년 4월 창립하였다. 이 은행은 북한측의 조선국제합영총회사와 조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가 5:5의 비율로 출자하였으며, 이 은행의 성격은 합영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문제를 비롯한 대내외 결제, 현금관리, 송금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합영회사들과 북한을 방문하는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전문금융기관이다.

조선합영은행의 주요기능은 외화예금 및 저금을 취급하고, 합영기업을 대상을 융자업무를 담당하고, 엔, 달러 등 자본주의국가들과의 통화와 여행자수표를 취급하는 외국환업무를 수행하고, 송금수표, 보통송금, 전신송금 등의 송금업무를 담당한다.

대외거래의 주요결제통화는 파운드, 마르크, 스위스프랑 등이 이용되거나 계약에 따라 엔이나 달러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외화관리법 제8조에서는 대외거래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화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외화관리기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외화가 아닌 다른 외화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대외경제계약제도

북한은 1995년 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대외경제계약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1985년 3월 중국이 채택한 『섭외경제계약법(涉外經濟合同法)』을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대외경제계약법의 제정은 북한에서 대외무역, 투자 및 서비스 관련 제반 상업계약의 체결형식 및 절차와 계약이행의 내용과 효과 등에 관한 법제의 기본골격을 갖추는 법적토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sup>79)</sup> 대외경제계약법(이하 이 절에서 ‘법’이라 함)은 대외경제계약의

79) 신웅식,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 한국경영법무연구소, 『월간 경영법무』, 1995. 8, 20면 참조.

체결, 이행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제8조). 대외경제계약법의 주요 내용 중 특징적인 부분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 (1) 대외경제계약법의 기본

이 법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제적 협조와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즉, 국제 상거래질서의 일반적 원칙에 맞는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지는 법 제4조에서 “국가는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에서 평등과 호혜, 신용의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고, 제5조에서 “국가는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국제관례를 존중하도록 한다”고 천명한 데서도 읽을 수 있다.

법상 대외경제계약에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계약이 속한다(제2조). 그리고 대외경제계약의 당사자로는 대외경제거래를 하도록 승인받은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제3조). 따라서 북한 주민 개인은 대외경제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인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대외경제계약의 외국측 당사자에 관하여는 그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sup>80)</sup>

북한은 대외경제계약에서도 상당부분 국가의 후견적 지위를 규정화하고 있다. 즉, 국가는 대외경제계약당사자들이 원리능력의 범위에서 계약을 맺으며 그 이행과정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제6조). 그리고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정무원(내각) 대외경제기관이 하며, 계약대상에 따라 해당기관도 감독통제를 할 수 있다(제7조). 그런데 이 경우, 감독통제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측과 대외계약을 체결한 외국측 당사자로서는 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이행 여부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영역

80) 박정원, 『북한법률용어의 분석(IV)』, 앞의 책, 160면 참조.

에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한 계약, 거래액이 많거나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계약의 체결은 정무원(내각) 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제11조), 계약이 효력을 가진 때부터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승인한 기관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30조), 계약을 양도, 변경, 취소하려는 경우 그 계약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제32조)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될 수 있다.

## (2)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는 승인된 업종, 지표, 수량의 범위에서 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 경우 상대방 계약당사자의 법인 또는 거주등록과 재산, 이행담보 같은 신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제9조)하고 있다. 상대방 계약당사자의 법인 또는 거주등록과 재산, 이행담보 같은 신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제18조에서 “나라의 안전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주는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한 것과 같은 취지로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지위에 따른 노파심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계약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이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10조). 그러나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달리 정하려 하거나 표준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제10조제2문). 북한은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涉外經濟合同法)과는 달리 절대적 기재사항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sup>81)</sup>

---

81)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 제12조에서는 계약에 통상적으로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1. 계약당사자의 명칭 혹은 성명, 국적, 주 사업장 혹은 주소
2. 계약 날인·일시 및 장소
3. 계약의 유형, 계약대상의 종류 및 범위
4. 계약대상의 기술적 조건·품질·표준·규격·수량
5. 이행기간, 장소 및 방식
6. 가격조건, 지불금액, 지불방식 및 각종 부대비용
7. 계약양도의 가부 또는 계약 양도조건
8. 계약위반에 따른 배상, 기타 책임

북한영역에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한 계약, 거래액이 많거나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계약의 체결은 정무원(내각) 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1조)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다.

계약체결은 서면으로 하며, 인쇄전신 또는 모사전신으로 맺은 계약도 서면계약으로 인정된다(제13조).

그리고 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수표(서명)한 때, 계약서에 지정한 계약효력발생조건이 이루어진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약은 해당기관이 승인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제14조). 그리고 계약은 위임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도 맺을 수 있다(제15조).

나라의 안전에 해를 주거나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주는 계약, 기만 또는 강요로 맺은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이 조항의 “나라의 안전에 해를 주거나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주는 계약”에 대하여는 전혀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대단히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측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손상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3) 대외경제계약의 이행

대외경제계약의 이행에 있어 계약당사자는 정한 기간에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제19조제1문),<sup>82)</sup> 계약당사자는 상대방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정확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

#### 9. 계약에 사용하는 문자와 그 효력

82) 현재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에서 제19조제2문은 “상대편 계약당사자는 동의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시켜 리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계약법리상 ‘있다’는 ‘없다’로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되며, 제20조에서 “계약당사자는 상대방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리행하는 경우 그 리행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정확한 리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계약상 의무리행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한 것과는 들어맞는다.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涉外經濟合同法) 제16조제2문에서도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해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문이 정확한지, 자료들의 오류인지 확인을 요한다. 자료는 대표적으로 통일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gi-kr/body.cgi?42D42/D4221.htm>) 참조.

정하고 있다(제20조). 제20조의 경우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 즉, 불완전이행에 대해 이행을 거절하거나, 이행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 봉쇄, 급성전염병 발생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 계약의무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찌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과 내용, 범위를 곧 상대방 계약당사자에게 알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공증문건을 보내야 한다(제21조제1문 및 제2문).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기간은 그만큼 연장된다(제21조제3문). 이 경우의 “어찌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하여 자연재해, 봉쇄, 급성전염병 발생 등이라고 예시되어 있으나 ‘봉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기타의 어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수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계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을 생각된다.

계약당사자는 상대방 계약당사자가 계약의무이행을 태만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이행을 중지한 데 대하여 알려야 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그런데 이 조항에 있어서는, 명백한 이행지체 또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의무이행을 태만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 해석이 매우 애매모호하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계약이행을 중지한 계약당사자는 어찌할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상대방 계약당사자가 계약이행을 담보하는 데 따라 계약의무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제23조).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계약당사자는 그 의무를 계속 이행하려고 할 경우 상대방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4조).

계약이행기간은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제25조).



#### (4) 대외경제계약의 양도와 변경, 취소

계약당사자는 상대방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자기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양도기간은 계약이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조).

또한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일부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에는 수정, 삭제, 보충이 속한다고 한다(제27조).

계약은, 정한 기일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이유없이 계약의무이행을 중단하거나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선언한 경우, 계약위반으로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시정할 기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어찌할 수 없는 사유가 계약이행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밖에 계약에서 정한 취소조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취소사유를 명시하고 있다(제28조). 계약의 취소는 계약을 어겼거나 이행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 계약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제29조).

그리고 계약을 승인한 기관은 해당계약이 효력을 가진 때부터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제30조).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손해보상, 청산 및 분쟁해결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제31조).

그리고 계약의 양도, 변경, 취소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계약을 양도, 변경,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2조).

#### (5)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해결

계약을 어긴 계약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보상청구권을 가지며 손해를 입힌 계약당사자는 보상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계약을 위반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위약금을 물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며, 손해보상은 화폐, 현물, 재산권으로 하거나 가격조절 또는 자체 비용으로 허물을 없애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제34조). 북한의 법령에서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구별하지 않고 손해배상도 손실보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때로는 손해배상과 손해보상이란 용어를 같은 법문에서 혼용하기도 한다.<sup>83)</sup> 손해보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민법(제394조)과는 달리, 화폐, 현물, 재산권으로 하거나 가격조절 또는 자체 비용으로 허물을 없애는 방법 등 원상회복을 위주로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sup>84)</sup>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에서 정한 손해보상청구기간에 해야 하며, 계약에 손해보상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르고,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시효기간<sup>85)</sup>에 할 수 있다(제35조).

보증조건이 설정된 계약대상의 허물에 대한 손해보상청구는 보증기간에 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하며, 보증기간에 계약대상의 허물을 발견하였으나 그것을 완전히 확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계약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먼저 알리고 허물이 확증된 다음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제36조).

83) 대외경제계약법 제35조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84) 북한 민법(1990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호로 채택) 제242조에서는 민사책임의 형태로 ①재산의 반환, ②원상복구, ③손해배상, ④위약금, 연체료 같은 제재금의 지불, ⑤청구권의 제한 또는 상실을 들고 있고, 제247조에서도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그 재산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재산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주거나 그 값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85) 북한 민법에 따르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 또는 공민들 상호간의 민사시효기간은 1년이며(제260조),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민사시효기간은 다음과 같다(제261조).

1. 제품의 대금청구와 보증금반환청구,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건본의 위반과 파손, 부패변질, 수량부족, 그 밖의 계약조건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청구와 위약금, 연체료의 지불청구 및 운수, 채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3개월
2. 앞호 이외의 청구에 대하여서는 6개월
3. 외국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수입품의 사고와 관련한 보상청구, 국제연락운수 및 국제통신과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해당 협정에 의한 기간.

손해보상을 받으려는 계약당사자는 손해보상청구서를 상대방 계약자에게 내어야 하며, 손해보상청구서에는 계약서번호와 계약대상, 손해의 형태와 범위, 보상청구근거, 요구조건을 밝히고 해당검사기관의 확인문건 또는 공증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37조).

손해보상 청구서를 받은 계약당사자는 정한 기간 내에 손해보상을 청구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거나 그 보상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38조제1문). 다만, 보상청구기간 또는 민사시효기간이 지났거나 보상청구근거가 명백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허물 있는 계약대상을 자의대로 처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8조).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계약금과 손해보상금, 위약금 같은 것을 정한 기일에 물지 못하였을 경우 늦어진 일수에 해당하는 이자 또는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제39조).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해당 나라와 맺은 조약에서 책임을 면제사유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규정(제40조)하여 타국과 체결한 조약에 대해 우선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는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것을 제때에 막아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제41조).

대외경제계약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2조). 이 규정에서는, 북한의 다른 외국인투자관련법상의 분쟁해결절차와 달리 북한의 재판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을 열거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협의, 북한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 및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만을 예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대외경제계약이 중재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sup>86)</sup> 북한도

86) 이에 대하여 북한에서 남한이나 다른 외국의 무역·투자·서비스 계약당사자를 북한의 통상적 재판소 관할 하에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북한의 민사

1998년 대외경제중재법의 채택을 통해 중재제도를 정비한 바가 있다.

#### (6) 대외경제계약법에 관한 검토

대외경제계약법은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들이 이 법에 준거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과 아울러, 향후 북한이 외국과의 교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법에 기초하여 구성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합영법, 외국인기업법 등과 그 시행규정들 및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대외경제계약이 규율되어, 계약체결의 방식이나 효과,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계약강제이행수단, 분쟁해결절차 및 방법 등이 그다지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 법의 제정·공포로 인해 대부분의 법적 문제들이 명확하게 규정되게 되었다.<sup>87)</sup>

그러나 이 법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외경제계약에서도 상당부분 국가의 후견적 지위를 규정화하고 있어 계약의 효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무원(내각) 대외경제기관이 하며, 계약대상에 따라 해당기관도 감독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제7조)하고 있으나, 감독통제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측과 대외계약을 체결한 외국측 당사자로서는 계약의 효력 또는 이행여부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해석상 다소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제18조의 '나라의 안전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주는 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한 조항, 제21조의 '어찌할 수 없는 사유', 제22조

---

재판부가 무역분쟁을 해결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상거래 또는 대북투자를 한 외국과 남한의 당사자들이 북한 중재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북한의 중재제도 - 국가중재재판제도를 중심으로 -』, 법원행정처, 1995, 137면 및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93~94면 참조.

87) 박정원, 『북한의 법률용어분석(IV)』, 앞의 책, 114면 참조.

의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의무이행을 태만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북한과의 실제 교역을 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효력발생조건 및 불가항력의 구체적인 사유에 관해 계약상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다.

### 3. 대외경제중재제도

북한은 분쟁발생시 그 해결을 위하여 1995년에 채택한 『중재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북한 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었다.<sup>88)</sup> 그 동안 북한에서의 대외무역중재는 『조선국제무역추진위원회 소속 무역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1956년 11월 24일 시행)과 역시 같은 날짜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재위원회에 있어서의 사건처리규정』, 그리고 1989년 1월 4일 국제무역촉진위원회 결정 제2호로 채택된 『중재심문규칙』<sup>89)</sup>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외중재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법, 합병법, 대외경제계약법 등 외국인투자 및 대외거래 관련법률들에서 단편적으로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년 8월 『대외경제중재법』(이하 이 절에서 ‘법’이라 함)을 채택하여 대외경제관계의 총괄적인 중재절차를 규정하게 되었다.

그 동안 북한과의 무역거래 또는 투자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북한 자체의 신뢰성 부족, 즉, 낮은 신용도, 높은 정치적 위험, 정보의 비공개성 등과 아울러 국제적 상거래 및 투자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범들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되어 왔으며, 중재제도도 그 중의 하나이다. 대외경제중재법의 제정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하여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생각된다.

88) 중국의 경우에는 1994년 8월 제정된 『중재법』 제7장에서涉外중재특별규정 9개 조항을 두어涉外경제무역, 수송 및 해상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한 중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89) 이것의 영문판인 『Rules of Hearing』은 최중고, 『북한법』, 박영사, 1996, 264~274면 참조. 그 번역문은 『남북상사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대한상사중재원, 1994 참조.

이하에서는 대외경제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sup>90)</sup>

### (1)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대외경제중재법은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제1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외경제분쟁의 해결은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조선해사중재위원회와 같은 중재위원회가 하며,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분쟁을, 조선해사중재위원회는 해상수송, 해난구조, 공동해손 같은 분쟁을 심리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조). 종전에는 중재제도가 국가중재와 무역중재로 나뉘어져 있고, 법해석에 따라 중재기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 법의 제정으로 대외무역중재위원회와 해사중재위원회로 중재기관이 확정되게 되었다.<sup>91)</sup>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은 중재위원회사업을 맡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조).

법 제4조는 대외경제중재로 심리해결하는 분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2.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3.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4.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5. 외국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6.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과 해외동포, 외국인 사이에 생긴 분쟁

제4조제6호에 따르면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과 해외동포간의 분쟁도 중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동포와의 무역거래 또는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

90)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및 중재제도에 관하여 상세히는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앞의 책 참조.

91) 정원준,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해설”, 『북한뉴스레터』 1999년 5월호 참조.

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외경제중재는 분쟁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따라 분쟁당사자 일방이 낸 중재제기 문건에 의하여 하며, 서면합의에는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조항과 분쟁발생 후 당사자들이 맺은 중재계약이 속한다고 한다(제5조).

국가는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객관성, 과학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여 허물없는 분쟁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제6조), 또한 중재활동에서 국제 조약과 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중재절차의 진행과 국제적 질서의 준수를 천명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중재제기

분쟁당사자는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중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재제기는 시효기간 안에 중재제기서와 그에 첨부할 문건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제8조).

중재제기서에 밝혀야 할 내용은 ①분쟁당사자의 명칭(이름)과 법적 주소, 법정대표 또는 그 대리인, ②중재기관, 준거법 같은 중재합의내용, ③청구 내용과 금액, ④재결원의 선정과 관련한 의사표시 또는 재결원의 이름, ⑤이 밖의 필요한 내용 등으로 정하고 있다(제9조).

그리고 중재제기서에 첨부할 문건은 ①중재조항 또는 중재계약서 원본, ②중재비용납부확인문건, ③중재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낸 청구문건, ④피신청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건, ⑤이 밖의 필요한 문건으로 정하고 있다(제10조).

중재신청자는 중재제기문건을 제출하면서 중재비용을 내어야 하며, 중재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다(제11조제1문 및 제2문). 그리고 필요에 따라 중재비용의 일부는 중재위원회가 중재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제기문건을 10일 안으로 검토하고 접수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2조).

피신청자는 제기된 중재에 대하여 맞중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법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내용과 첨부문건 등의 요구를 갖추어야 한다(제14조제1문 및 제2문). 그리고 맞중재는 기본중재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며, 중재심리가 끝나기 전에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제14조제3문).

중재신청자는 중재제기를 변경, 취소하거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제15조제1문). 중재제기를 변경,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시효기간 안에 다시 중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청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제15조제2문 및 제3문).

분쟁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중재를 제기하거나 그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는 북한 국민이나 외국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16조).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합의한 대외경제중재사건이나 재결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판기관은 해당 문건을 소송제기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도록 규정(제17조)하고 있어, 중재와 재판 가운데 하나만을 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당사자가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합의하였을 경우 민사소송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였다.

### (3) 중재심리

중재심리는 재결원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된 재결원협의회가 하며, 재결원은 분쟁사건처리에서 독자적이며 분쟁당사자를 대표할 수 없다(제18조)고 규정하여 재결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결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중재위원회 성원, 분쟁사건을 심리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 및 경제 부문의 일군, 변호사, 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자, 필요에 따라 중재부문에서 널리 알려진 해외조선 동포 또는 외국인 등으로 규정(제19조)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재결원명단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재결원명단에는 재결원의 이름과 직장직위, 전문지식, 중재활동경력 같은 내용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제20조제1문 및 제2문). 재결원의 인물자료를 출판물에 소개할 수 있도록 규정(제20조제3문)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분쟁을 심리해결하기 위한 재결원의 수는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며,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그 수를 정한다(제21조).

분쟁을 심리할 재결원은 분쟁당사자들이 재결원명단에서 선정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재결원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선정한다(제22조제1문 및 제2문). 해당 기관은 선정된 재결원의 사업조건을 보장하도록 규정(제22조제3문)하여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분쟁당사자는 재결원을 바꾸어줄 데 대하여 해당 중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제기된 내용을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제23조).

중재심리 날짜와 시간, 장소는 재결원협의회가 정하며, 중재위원회는 중재심리 시작하기 30일전까지 분쟁당사자들에게 중재심리 날짜와 시간, 장소 같은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제25조).

중재심리는 해당 중재위원회의 소재지에서 비공개로 하나, 분쟁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중재심리를 공개로 할 수 있으며 소재지 밖의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다(제26조).

재결원은 중재심리과정에 심리중지, 사건기각사유를 발견하였거나 중재심리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중재심리를 중지하거나 끝내도록 하고 있다(제31조제1문). 그리고 중재심리기간은 중재제기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제31조제2문)하여 절차의 신속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쟁당사자는 언제든지 화해를 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면 진행 중에 중재심리를 끝낸다(제33조).

대외경제분쟁은 조정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며, 조정은 조정인과 분쟁당사자들로 구성된 조정회의에서 조정인이 제출한 안에 쌍방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제34조)하여 조정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세부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sup>92)</sup>

92)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서 조정제도를 규정한 것은 중국의 『중재법』(제51조 및 제52조)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언급한 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심문규

#### (4) 재결과 그 집행

재결은 중재심리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선고하며, 부득이한 경우 재결선고기간을 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35조).

재결문에 밝힐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36조).

1. 분쟁당사자의 명칭(이름)과 법적 주소, 법정대표와 그 대리인
2. 중재심리날짜와 재결원, 서기의 이름
3. 사건의 명칭, 중재심리참가정형
4. 신청자의 청구내용과 피신청자의 답변내용
5. 중재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6. 재결에서 의거한 법규범
7. 사건해결과 관련한 결론
8. 중재비용부담관계
9. 재결선고날짜
10. 이 밖의 필요한 내용

재결문은 조선어로 작성하며, 분쟁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번역문을 첨부할 수도 있으나, 번역문 해석에서 차이날 경우에는 조선어원문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제37조).

재결문은 재결원의 투표(서명)와 중재위원회의 공인이 있어야 효력을 가진다(제38조제1문). 그리고 3명의 재결원이 분쟁을 심리한 경우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재결원은 재결문에 투표하지 않으며, 이 경우 중재심리조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중재위원회에 내야 한다고 규정(제38조제2문 및 제3문)하여 재결원이 다수일 경우 다수결에 의함을 알 수 있다.

재결원은 중재심리의 중지결정과 사건기각결정, 화해결정을 내릴 수 있다(제39조제1문). 심리중지를 하였던 사유가 없으면 중재심리를 계속한다(제39조제2문). 화해결정에는 화해조건을 지적하며, 화해결정은 재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39조제3문 및 제4문).

---

칙(1989. 1. 3 제정) 제7장 제49조 내지 제54조에서는 조정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분쟁당사자는 재결문에 지적된 기간 안에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제41조제1문). 재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쟁당사자는 재결문을 받는 날부터 30일 안으로 일부 표현과 내용을 수정보충하거나 해석해줄 데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6개월 안으로 잘못 내렸다고 인정하는 재결을 취소시켜줄데 대하여 해당 재판기관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제41조제2문)하여 재결에 대한 불복절차를 정하고 있다.

책임있는 분쟁당사자가 재결문에 지적된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그가 거주하고 있거나 집행하여야 할 재산이 있는 지역의 재판기관에 해당 재결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제42조). 그리고 재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재산이 북한영역 밖에 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 재판기관에 재결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제43조).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과거의 무역중재심의규정보다 구체화되었지만, 중국의 중재법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중국 중재법은 재결 불이행시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판정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집행조항과 함께 인민법원이 판정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제63조)와 판정집행절차를 중지하는 경우(제64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중재 규정에서는 뉴욕협약 등 중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에 의한 집행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sup>93)</sup>

#### (5) 대외경제중재법에 대한 검토

북한은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함으로써 대외경제개방방법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제경제질서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특히 분쟁해결의 원칙으로 공정성과 신속성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천명한 점 등은 충분히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93) 윤상직, “북한중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대외경제중재법상의 무역중재를 중심으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2000년 2월호, 78면 참조.

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up>94)</sup>

첫째, 법규의 정합성 미비에 관한 문제이다. 즉, 대외경제중재법이 대외경제부문의 중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대외경제계약법 등 관련법규 및 하부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법해석 및 적용상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조항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중재비용, 중재제기시 필요문건, 재결원의 자격, 중재제기 및 심리절차 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대외경제중재법이 과연 공정한 분쟁해결을 담보할 만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sup>95)</sup> 이 법에는 국제조약 및 관례를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국가와 타국가 국민간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sup>96)</sup>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국제규범의 준수에 관한 보다 명확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제 5 절 북 · 일 무역에 관한 사례검토

### 1. 북 · 일간의 무역제도

북한의 무역관련법제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외부에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무역관련법제

94) 정원준, 앞의 자료 및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앞의 책, 112~113면 참조.

95) 다른 글에서는 북한이 대외경제계약법,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3국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가 대외경제중재법에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분쟁해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정원준, 앞의 자료 및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앞의 책, 113면 참조. 그러나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은 강제중재가 아니라 분쟁당사자들의 서면합의(대외경제중재법 제5조)에 의해 적용되는 임의중재이며, 대외경제중재에 관한 북한 내부의 절차에 관한 법이므로, 굳이 제3국 중재기관에 관해 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대외경제계약법 등의 제3국 중재기관 조항과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대부분의 상사계약 또는 국가간의 교역에 관한 협정 등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96) 이른바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협약' 또는 '워싱턴협약'이라고도 함.

의 현실적 규범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의미에서 북한과 일본간에 체결된 상품거래에 관한 합의서<sup>97)</sup>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북한과 일본간에는 국교가 없기 때문에 민간무역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사항은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의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간에 1998년 1월 26일 체결된 『조·일 양국 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에 따르고 있다.

처음 이 일반조건을 체결한 당사자로는 북한측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담당하였으나, 일본측은 대북한 무역촉진단체로 『일조무역회(日朝貿易會)』가 1956년 설립되어 북한과의 무역에 관련되는 상사, 은행, 선박회사 등을 회원상사로 두고 외교관계가 없는 북한과의 무역촉진, 선박수송의 원활화 및 기술교류 등의 사업을 담당하였다. 일반조건이 1963년 2월 27일 처음 체결된 후 1965년 8월과 1980년 9월 등 2차에 걸쳐 개정될 때까지는 이 일조무역회가 체결하였으나, 제3차 개정이 되는 1998년의 일반조건은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가 일본측의 당사자로 나선 것이다.

일반조건이 1998년에 개정되게 된 것은 사회주의시장의 붕괴에 직면하여 자본주의시장의 확대를 목적으로 북한에 무역법이 새로 채택되는 등 무역의 글로벌화를 향한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설명되고 있다.<sup>98)</sup>

개정된 주요 내용은 ①전문에서 일반조건 목적과 그 적용범위를 새로 언급한 것, ②무역거래에 관한 기본조건을 『1953년 INCOTERMS』로부터 『1990 INCOTERMS』로 변경한 것, ③상품검사와 그에 수반하는 상품의 계산근거를 보다 유연하게 한 것, ④포장조건을 국제연합조약에 의거하여 국제화한 것, ⑤배선(配船)조건을 무역의 다양화, 다각화하는 방향에 의거하여 개정한 것 등이다.<sup>99)</sup>

이하에서는 이 일반조건을 북한의 무역관련제도와 비교·검토하면서 실제로 적용례를 알아보기로 한다.

97) 정식 명칭은 『조·일양국 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간의 합의서』이다.

98) 『朝鮮新報』, 1998년 6월 16일자 참조.

99) 朝鮮問題研究所, 『朝鮮資料』 1998년 7월호, 47면 참조.

## 2. 북·일간 합의서의 주요 내용

합의서 본문에서는 우선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 동아시아 무역연구회가 평등·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의 상사와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 가맹회원과의 상품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 일반조건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반조건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북·일 양국 상사간의 상품거래와 관련한 결제 및 그 외의 거래조건에 관하여는 『조·일 양국 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건』에 의할 수 있으며, 개별거래에 있어서 특별조건은 개개의 계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는 이 일반조건을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상호간에 협의하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합의서는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에 따라 1980년 9월 17일에 체결한 『조·일 양국 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조무역회간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였다.

이 합의서의 유효기관에 관하여는 서명한 날부터 5년간 유효로 하고, 계약자의 어느 일방이 합의서 만기 6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합의서 파기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씩 연장되도록 하고 있다.

이 합의서는 1998년 1월 26일 동경에서 체결하고, 조선어와 일본어로 각 2부 작성, 서명된 것으로, 이 두 가지 원문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를 대표한 부위원장 김정기와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를 대표한 회장 혼마(本間徹治)가 서명하였다.

일반조건 전문에서는 북한과 일본과의 무역교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일반조건을 정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반조건은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의 상사와 동아시아무역연구회에 가맹한 회원회사간의 무역거래에 적용된다는 점을 천명하면서도, 북한과 무

역거래를 행하는 일본의 모든 상사가 계약서에 본 일반조건을 이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어, 사실상 이 일반조건이 북한과 일본의 정부간에 체결된 무역협정과 다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정하였다.

### (1) 계약의 체결

일반조건 제1조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계약은 계약자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한 때 성립하며, 계약의 효력과 필요한 조건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조제1문 및 제2문). 단,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서명에 의해 발생한다(제1조제3문). 대외경제계약법 제14조제1호에서도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수표(서명)한 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대외경제계약법 제14조제3호에서 규정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약은 해당기관이 승인한 때” 효력을 가지도록 한 데 대하여는 일반조건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이는 물론 북한 내부의 승인절차이기기는 하나, 계약당사자들이 서명한 후에도 승인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해당기관의 승인을 효력발생조건(대외경제계약법 제14조제2호)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사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일반조건에서는 쌍방이 전신 또는 서신교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일방의 거래신청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수락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한다(제1조제4문). 전신 또는 서신교환에 의한 계약인 경우 계약후 10일 이내에 매도측이 계약서 2통에 서명하고, 매수측에 송부하며, 매수측은 그것에 서명하고, 그 중 1통을 매도측에 반송한다(제1조제5문 및 제6문). 단, 쌍방간에 계약서가 교환되지 않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제1조제7문). 전신에 의한 계약은 대외경제계약법 제13조에서도 인정되고 있으나, 그 세부적인 절차는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북·일 양국 상사간의 상품거래에 이용하는 표준계약서는 이 일반조건에 첨부된 양식<sup>100)</sup>으로 한다(제1조제8문). 이 양식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상품명, 수량, 품질·규격, 가격, 총금액, 결제방법, 포장, 선적기일, 하역조건, 특기사항(배선조건, 검사조건, 중재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세세한 사항이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다. 대외경제계약법 제19조에 의하면 계약은 정무원(내각) 대외경제기관이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조건에 규정한 계약서 양식이 대외경제기관이 만든 표준계약서에 가름하는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조건 제2조는 계약서의 변경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계약서에 첨부된 모든 부록은 계약서와 불가분의 것이며, 계약서 및 부록에 보충·수정·삭제 등의 변경을 가하려고 하는 경우는 반드시 쌍방의 전신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제2조)하고 있다. 대외경제계약법 제15조에서는 상품목록, 기술자료 같은 것을 계약서의 부록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 (2) 거래의 기본

일반조건 제3조는 상품거래의 기본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1990년 INCOTERMS』 가운데 어느 조건을 계약자 쌍방의 합의하는 바에 의한다고 한다.

INCOTERMS는 외국무역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역용어를 해석하기 위한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국가간에 무역용어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함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거나 또는 최소한 상당한 정도로 감소될 수 있다.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에서 시작되므로 당사자의 의무사항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사항을 매번 계약시에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정확할 수 있다. 따라서 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FOB(본선인도)나 CIF(운임 보험료포함인도) 조건과 같은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을

---

100) 부록의 자료 참조.



사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극복해 왔다. 여기서 정형거래조건이라 함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주요요소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20년대부터 추진한 무역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규칙을 이른바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하며, 이 규칙의 공식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정형거래조건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다. 간혹 이 규칙 내의 특정한 거래조건을 칭할 때에도 『INCOTERMS』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인코텀즈는 1936년 제정된 후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1957년, 1967년, 1976년, 1980년 및 1990년에 각각 개정 보완되어 왔다. 최근에는 관세자유지대의 확대, 무역거래에서 전자통신문의 사용증가, 운송관습의 변화 등이 나타남에 따라, ICC는 지난 10년 동안 시행해 온 1990년 인코텀즈의 내용을 보다 단순명료하게 개정하여 『INCOTERMS 2000』이라는 명칭으로 1999년 6월 21일에 이를 공표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전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간에도 국제무역의 일반적 관습에 따라 당시 시행되고 있던 『1990년 INCOTERMS』를 적용함으로써 무역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고, 특정거래조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켜 무역확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3) 선적시기

선적시기는 계약의 체결시에 있어서 쌍방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고, 기계 또는 설비의 매매계약서에 그 부속품 및 부분품의 구체적인 적기(積

期)가 약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당해 기계 또는 설비의 시동에 지장이 없는 최후의 부속품 및 부분품이 선적된 날짜로써 기계 또는 설비의 선적완료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4조).

#### (4) 상품검사

대외무역의 상품검사에 관하여는 북한의 수출품의 품질, 수량 또는 중량의 결정은 북한의 상품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검사증으로써 대금지불의 계산근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제1문). 북한의 상품검사기관으로는 대외상품검사위원회가 수출입 화물에 대한 공적인 검사기관으로서 검사,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던 사실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또한, 일본의 수출품에 대하여는 일본에서 공인된 상품검사기관의 검사증으로써 대금지불의 계산근거로 한다(제5조제2문).

단, 계약자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의 검사증명에 의할 수 있다(제5조제3문).

선적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매도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 필요에 따라 매수측이 자기를 위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매수측의 부담으로 검사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제4문 및 제5문). 또한 상품의 특성에 따라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기초하여 양·적지(揚·積地) 검사증명서의 평균치나, 양지(揚地) 또는 적지(積地) 검사증명서로써 대금지불의 계산근거로 할 수 있다(제5조제6문).

또, 상품의 특성에 따라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기초하여 매수측은 자기의 비용으로 선적시에 입회를 할 수 있다(제5조제7문).

#### (5) 포장 및 기호

포장에 관하여는 계약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매도측은 원거리의 해상수송과 그 후의 국내수송에 적합한 표준수출포장을 하기로 하고 있다(제6조제1문).

그리고 수출품의 표기에 관하여 매도측은, 각각의 포장면에 비소실성 도료로 계약번호, 상품명, 수하인, 규격, 케이스번호, kg단위의 정미중량

(正味重量) 및 총중량을 명기하고, 주의기호가 필요한 상품에는 그 뜻을 표시해야 한다(제6조제2문).

또한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sup>101)</sup> 제36조제1항 및 제2항B호<sup>102)</sup>에 규정된 『목적물은, 포장을 포함하여 이것이 체결시에 있어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져 있던 특별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주변사정으로 볼 때,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능 및 판단력을 신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뢰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제3문). 이것은 물품의 일치성에 관해 UN협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 (6) 기술문헌

기술문헌은 생산에 있어서 기계 또는 설비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지도를 원활히 하고, 임시수리를 할 수 있도록 일본어 또는 조선어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무역용어, 기술용어 등은 영어로 표시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한다(제7조제1문 및 제2문).

그리고 기술문헌에는 계약서 또는 그 외의 지도서번호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제7조제3문).

#### (7) 보증

매도측은 상품의 품질, 수량, 규격, 성능 및 기술조건이 계약의 각각의 조항에 일치하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제8조).

보증기간은 계약시에 쌍방이 상품의 특성에 맞추어 협의결정하도록 한다(제9조제1문). 계약시에 보증기간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기계류는 시동일로부터 12개월을 보증기간으로 하나, 선적일로부터 14개월을 경과할 수는 없도록 정하고 있다(제9조제2문 및 제3문).

---

10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102) 원문에는 ‘제36조제1항 및 제2항B호’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제35조제1항 및 제2항B호’의 오키인 것으로 보인다.

공장설비 1식 및 기타 기계장치 1식 외에, 무역관례상 보증이 부여된 상품(예를 들면, 내부장비품, 케이블제품 등)에 대하여도 그 보증기간을 쌍방이 계약체결시에 합의할 수 있다(제9조제4문).

매도인의 과실에 의해 도면, 가동지도서 및 계약에 명시된 그 외의 자료의 제공이 지연되어 시동이 지연된 경우, 선적일로부터 기산된 보증기간은 매도측의 과실이 지속되는 기간동안 연기된다고 규정(제9조제5문)하여 매도측의 과실책임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을 정하고 있다.

보증책임에 관하여는, 만일, 보증기간내에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매수측의 검사에 의해 판명된 경우, 매도측은 매수측의 통지에 의해 자기의 비용으로 그것을 수리하든가, 불량품 또는 부분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그 결함을 지체없이 제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매도측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제1문 및 제2문).

교환된 불량품 또는 부분품은 교환 후 매도측의 요구에 의해 3개월 이내에 반환하나 그 비용은 매도측이 부담한다(제10조제3문).

또한 발견된 결함에 의해 설비 또는 기계가 가동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동안 보증기간은 연장된다(제10조제4문).

그리고 만일, 발견된 결함이 매도측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매수측이 설비나 기계의 조립 또는 보수를 매도측이 제시한 규정대로 하지 않았거나, 관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매도측은 보증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제10조제5문)하여 매수측의 과실에 대한 보증책임의 면제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 (8) 배선조건(配船條件)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는, 계약상, 일본측이 배선하는 경우, 자유무역항을 제외하고는 남한 선박과 남한 사람들이 승선한 선박, 남한의 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한 상품수송은 할 수 없도록 규정(제11조제1문 및 제2문)하여 남한측의 관여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배선하는 선박의 선장에 대해 상대국의 법률과 규정 등을 준수시킬 책임을 진다고 규정(제11조제3문)하여 특히 북한의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주의 촉구를 통해 쌍방간의 불상사를 방지할 의도로 생각되며, 북한의 체제 고수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키고 있다.

제12조는 선적의 통지와 집하의 확인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운송지연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계약상 배선을 행하는 측은 상대방 또는 당해기관의 확인을 받은 입항일보다, 해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선을 지연시킨 경우, 확인을 받은 입항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간 경과 후의 항만창고료를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한다(제13조제1문). 또, 배선을 받아들이는 측이 하역준비완료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상품의 집하를 지연시켜 선적에 지장을 주어 지선(遲船) 또는 공선(空船)을 발생시킨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한다(제13조제2문).

선박의 입출항수속, 및 화물의 양·적하역조건(揚·積荷役條件), 그리고 선박의 취급에 관한 조건은 따로 정하도록 규정(제14조)하고, 합의서 말미에 『일본선박회사의 조선 무역항에의 배선(配船)과 선박 취급에 관한 조건』을 첨부하고 있다.

#### (9) 결제조건

결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제15조).

①신용장결제의 경우에는 매수측은 매도측을 수익인으로 하고, 거래은행이 발행하는 쌍방이 합의한 통화에 의해 계약상품대금전액이 포함된, 북한측 은행과 일본측 은행간에 체결된 대리업무에 관한 협약에 기초하여 취소불가능, 일람불 신용장을 개설한다. 신용장의 개설기일은 계약자 쌍방이 계약시에 협의결정한다. 신용장의 유효기간은 선적 후 15일간으로 한다.

②상품대금의 선불, 또는 후불 및 연불조건을 포함한 결제방법에 관하여는 쌍방이 계약시에 협의결정한다.

즉, 신용장거래는 북한 은행과 일본 은행간에 체결된 협약에 기초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다른 조건의 결제에 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도측은 상품의 선적 후, 무고장선적선하증권 외 정해진 서류<sup>103)</sup>를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16조).

#### (10) 계약의 조건변경 및 해지

계약자의 일방이 계약에 정한 조건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계약의 효력 발생 또는 상대방의 계약가격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가격의 개정(改訂)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의 변경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제17조).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쌍방간의 합의로 가격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그리고 계약에 정해진 결제조건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일방이 상품의 인도 또는 인수를 양적(揚積)예정일의 월말로부터 30일 이상 지연시킨 경우, 계약자의 일방은 계약 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전신 또는 문서로써 통고한 다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8조).

#### (11) 배상청구

매수측은 양하항(揚荷港)에 도착한 상품이 약정의 조건 또는 선적서류의 기재사항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도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도록 정하고 있다(제19조제1문). 다만, 상품의 보증기간을 경과한 뒤 발생한 성능의 자연적 감쇠, 훼손에 대하여는 배상청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제19조제2문). 그리고 포장의 불비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매도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제3문).

배상청구의 유효기한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제20조제1문), 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20조제1문제5호).

103) 정해진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무고장선적선하증권, 완전 1식
- ② 송장, 정본 1통, 부분 2통
- ③ 품질검사증명서 및 수량 또는 중량증명서 정본 1통, 부분 2통
- ④ 포장명세서, 정본 1통, 부분 2통
- ⑤ 그 외 신용장에 규정된 자료

- ①수량에 대하여는 당해상품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한 날로부터 50일 이내.
- ②품질에 대하여는 당해상품을 적재한 날로부터 75일 이내.
- ③수량, 품질 이외의 계약이행과 관련한 배상청구는 상품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한 날 또는 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④보증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는 보증기간 이내에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매수측은 사고내용을 매도측에 통지한다. 이 경우 매수측은 보증기간 경과 후라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체의 배상청구는 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를 첨부하고, 서면에 의해 서류편으로 제기해야 하며, 배상청구의 날짜는 배상을 제기한 측의 우편기관의 수령증의 날짜에 의한다(제21조).

계약자의 일방이 제기한 배상청구에 대해 상대방은 배상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회답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하등의 회답도 하지 않는 경우, 배상청구는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다(제22조).

## (12) 벌칙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불이행상품대금의 3%의 벌금 및 일방에 준 實損額(증빙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을 지불해야 한다(제23조).

또한, 제17조 및 제18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의 인도 또는 인수를 지연시킨 측은 선적예정일로부터 15일간을 제외하고, 그 익일부터 30일까지는 지연상품대금의 1%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그 후 지연 20일 간마다 1%씩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4조본문). 단, 위약금은 상품대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제24조단서).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의 청구는 서면에 의해 서류편으로 행하고, 청구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기한을 설정하고 있다(제25조).

### (13) 배상금 및 위약금·보상금의 지불

배상금 및 위약금·보상금은 당해 계약에서 규정된 통화에 의해 금액 확정 후 60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하되, 계약자 쌍방이 합의한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6조).

### (14) 분쟁의 해결 및 중재

계약의 체결이나 계약의 이행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해서 생긴 모든 분쟁은 먼저 계약자 쌍방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제27조제1문).

계약자 쌍방의 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불만의 제기자가 북한측인 때에는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일본측인 때에는 동아시아무역연구회에 각각 의뢰하여 해결을 도모하도록 하고, 의뢰를 받은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동아시아무역연구회는 그 뜻을 서로 연락하여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도록 규정(제27조제2문 및 제3문)하여 협정체결의 당사자인 양 기구가 법적인 절차에 앞서 임의적으로 분쟁의 해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양국간에 정식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쌍방 계약당사자간의 직접적인 충돌을 가급적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계약자 쌍방은 양 기구에 의한 해결을 의뢰한 뒤 6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규정(제27조제4문)하고 있다.

중재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제28조).

- ① 피신청인이 일본측인 경우 일본의 국제상사중재협회에 제소한다.
- ② 피신청인이 북한측인 경우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
- ③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한다.
- ④ 중재는 제소를 접수한 중재기관의 사건심리규정에 의해 중재기관의 소재지에서 행한다. 중재인의 재결은 쌍방에 대해 최종적이고 의무적이다.



⑤중재는 분쟁 발생 후 15개월 이내에 제소해야 하며, 그 기간 후에는 제소할 수 없다.

⑥중재비용은 재결에 의해 따로 정한 외에는 패소측이 부담한다.

즉, 중재는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이 속하는 국가의 중재기관에 각각 제소하도록 하며,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 (15) 불가항력

전쟁, 풍해, 자연화재, 수해로 계약자 쌍방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 쌍방은 그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제29조제1문)하고 있다.<sup>104)</sup> 그리고 불가항력의 사태는 사전에 예견할 수 없고 계약체결 후에 발생한 것이라야 한다(제29조제2문).

불가항력의 사태 하에서는 쌍방의 계약상 의무이행기간은 그러한 사태 또는 그 결과가 작용하는 기간동안 연장되나, 불가항력의 사태 또는 그 결과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어느 측도 잔여계약 이행을 포기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제29조제3문 및 제4문)하여 불가항력적 사태에 대한 이행기간의 연장과, 장기간 지속됨에 따른 쌍방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 해지권을 명시하고 있다.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도측이나 매수측은 즉시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유가 2개월간 지속되든가 또는 해소된 경우는 그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발생의 관계당국기관 또는 관계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재해증명서를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한다(제29조제5문 및 제6문).

---

104) 불가항력에 관하여, 대외경제계약법 제21조에서는 “자연재해, 봉쇄, 급성전염병 발생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사유”라고 규정하여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었으나, 일반 조건에서는 “전쟁, 풍해, 자연화재, 수해로 쌍방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라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6) 기타

계약의 체결에 있어 상품의 특성, 또는 당해 거래의 특수성에 의해 필요할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본 일반조건의 각 조항과 다른 조건으로도 계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30조).

그리고 이 결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그 외의 조건 및 의심스러운 문제는 그 때마다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제32조), 북·일 양국의 상사간에 교환되는 일체의 문서는 조선어,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기로 정하고 있다(제33조).

3. 북·일간 무역제도에 대한 검토

먼저, 북·일간의 이 합의서는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의 동아시아무역연구회라는 단체가 계약당사자로서 쌍방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특히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의 상사와 일본의 동아시아무역연구회에 가맹한 회원사간의 무역거래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북·일간에 무역거래를 하는 일본의 모든 상사가 이 일반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국가간의 무역협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합의서에는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이나 대외경제중재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평등과 호혜, 신용의 원칙”이나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국제관례를 존중한다”는 노력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3조에서 상품거래의 기본조건으로 『1990년 INCOTERMS』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제6조에서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을 적용하도록 한 것, 제28조제3호에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합의서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 등에 규정된 조문의 내용보다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조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외경제계약법에서는 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관해 열거하고 있지 않은 것과는 달리, 합의서에 첨부된 표준계약서는 상품명, 수량, 품질·규격, 가격, 총금액, 결제방법, 포장, 선적기일, 하역조건, 특기사항(배선조건, 검사조건, 중재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세세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일본이라는 상대국과의 협상과정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인식이 상당부분 변화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계약자 쌍방의 협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곧바로 중재 또는 소송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또는 동아시아무역연구회에 각각 의뢰하여 해결을 도모하도록 하는 절차를 둔 것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무역거래의 한계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제 3 장 북한 무역제도의 주요 내용 및 분석

## 제 4 장 특수지역 무역제도와의 비교

북한영역 내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무역관련제도에 관하여 검토해 본 결과,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무역관련조직과 제도에 관하여 상당한 변화를 겪었으며, 그 방향은 대체적으로 국제적 무역질서에 맞는 조직과 제도의 정비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무역관련조직의 내각 무역성으로의 통합 노력, 무역법을 비롯해 대외경제계약법이나 대외경제중재법의 제정 등이 그러한 경향을 대변해 주고 있다.

여기서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무역제도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제도와 비교를 통해 북한 무역제도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제 1 절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무역제도와의 비교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이하 ‘지대법’이라 함)에 의하면,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이하 ‘지대’라 함)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는 지대로서,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 지역으로 선포한 영역이다(지대법 제2조). 따라서 북한의 다른 영역과는 달리 기업의 설립 및 무역에 관한 특혜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특징적인 점을 비교·검토해 보기로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으로 개정되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무역활동의 자유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관세면에서의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입규제면에서의 자유이다. 이러한 조치는 이 지대를 국제적인 자유무역지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자유무역지대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로 한 것은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정책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냄과 아울러 무역의 자유에도 다소간의 제한이 가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1. 무역의 주체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외국투자가는 합작, 합영, 단독투자 같은 형식으로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지대법 제7조). 외국인투자법 상에는 외국투자가는 북한영역 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외국인투자법 제3조)하여 합작기업과 합영기업은 북한영역에 설립하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서술되고 있으나, 합영법 제2조에서는 “합영기업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창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창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합작법 제5조에는 “합작투자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영기업과 합작기업 모두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 북한의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외국인투자법 제14조). 그러나 북한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기업의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과 외국기업은 북한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외국인투자법 제14조단서).

따라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 무역의 주체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그리고 외국인기업이 될 수 있다.<sup>105)</sup> 그런데 지대법 제18조에서는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내각의 승인 밑에 지대에 단독 또는

---

105)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기업들의 『외국인투자법』 제2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외국투자가란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이란 공화국령역 안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 기업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말한다.
-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리운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몹에 따라 리운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 외국기업이란 공화국령역 안에 소득원천이 있는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하여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9조에서도 “합영, 합작 기업과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의 승인 없이는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을 내올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단독으로 투자하거나 내각의 승인 하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합영 또는 합작을 하는 형식으로 지대 안에서 무역활동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sup>106)</sup>

1999년 2월 26일의 『외국인투자법』 개정에 의해 “해외조선동포는 해당 법규에 근거해 공화국 영역 내에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외조선동포의 투자를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조선동포는 외국인투자법이 아닌 별도의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대북투자는 외국인투자관련법규에서 언급되지 않고, 해외조선동포 투자관련법규에서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sup>107)</sup> 따라서 한국인의 대북투자는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체결, 1992년 발효)와 이후 진행된 남북한간의 별도의 합의서에 의거 처리될 것으로 생각된다.

## 2. 무역의 지도기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관리운영기관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 해당 중앙기관과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 속하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자기임무와 권한에 따라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그 관리 운영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이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지대전반사업을 현지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다(지대법 제8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지대법 제9조).

106)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내에 투자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자유경제무역지대 국내투자기업 창설 및 운영규정』(1997년 5월 17일 정무원 결정 제23호로 승인)이 있다.

107) 북한에서 한국인은 ‘남조선동포’로 불리며 ‘해외조선동포’와는 구별되고 있다. 이찬우, 앞의 자료 참조.

1. 무역, 외국투자와 관련한 국가적인 집행대책을 세운다.
2. 해당 중앙기관들과의 연계밑에 대외경제무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도한다.
3. 외국투자대상신청을 접수하고 심의처리 한다.

따라서 지대에서 무역 및 외국투자와 관련한 총괄적인 지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이 중앙무역지도기관이다. 북한은 1999년 2월, 외국인투자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했으며, 이 때 외국투자관련 법규에서 ‘중앙대외경제기관’이라는 명칭이 모두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 수정되었고, 이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성의 ‘경제협조관리국’을 의미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sup>108)</sup>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지대에 대한 투자신청과 기업창설의 승인, 투자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 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는 무역과 외국투자, 지대개발을 촉진하고 그 관리운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집행하기 위한 대외경제부서를 둘 수 있고(지대법 제11조), 또한 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지대법 제12조).

1. 무역과 지대개발계획을 작성, 선전, 집행한다.
2. 외국투자신청을 현지에서 접수하며 그 심의 창설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제기한다.
3. 기업등록, 영업허가를 한다.
4. 외국투자기업의 노력채용을 방조한다.
5. 토지, 건물 이용권의 양도를 심의하고 해당 중앙기관에 그 승인을 제기한다.
6. 건물, 구축물, 작업장의 건설, 개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봉사를 한다.
7. 이밖에 지대관리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따라서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라진·선봉시 현장에서 무역업무를 포함해 실무적인 사업을 책임지는 지도기관이다. 위원회는 이밖에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 등을 할 수 있다.

---

108) 이찬우, 앞의 자료 참조.



그런데 1999년 2월 26일 외국인투자관련법규 개정전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하부구조 건설부문은 총투자액 2,000만원, 그 이외 부문에서는 1,000만원까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대상에 대한 심의승인권이나진·선봉지대 당국에 주어져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이 설립 신청을 수리해 심의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 현지에서의 신청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제기할 권한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외국의 자유경제지대들이 약 50%가 실패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지대당국에 응당한 권한을 주지 않은 것과 관련된다고 분석하고, 북한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참작하여 지대당국에 권한을 최대한으로 주는 방향에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설계하였다고 강조해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북한당국의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관한 정책이 다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당국의 권한도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무역활동의 원칙

지대법 제17조에서는 “모든 상품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들여다 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할 수 있으며 그것을 지대 안에서 국외로 내갈수 있다”고 하여 무역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올 수 없다고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투자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을 창설·운영하여 무역활동을 할 수 있으며, 중계수송도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내각의 승인 하에서 단독 또는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하여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 4. 통관 및 관세제도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서는 특혜관세제도가 실시된다(지대법 제25조). 따라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

하여서는 관세가 면제된다(지대법 제26조).

1.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 안에 들어오는 상품
2.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외국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량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4.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5.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

지대법에서는 이 지대가 중계무역중심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상품과 통과무역화물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중계무역에 관하여는 1996년 7월 15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된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으로 규율하고 있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는 다만, 다른 나라로부터 지대 안에 상품을 팔기 위하여 들어오는 경우, 지대 안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입한 상품을 북한의 다른 지역에 팔기 위하여 내가는 경우에는 관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지대법 제27조).

또한 외국투자기업이 지대 안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 안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 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지대법 제28조).

이것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가 완전한 무관세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대법에서는 이 지대를 무관세지대로 규정하지 않고 특혜적인 관세지대로 규정하였다.

지대안의 외국투자기업은 세관 검사문건과 상품송장을 비롯한 상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문건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지대법 제29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의 통관 및 관세제도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지대법 제23조에서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항출입질서에 따라 자유롭게 나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역항의 출입질서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항규정』(1994년 4월 28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 5. 외화관리 및 결제제도

지대안에서도 유통화폐는 조선원으로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조선원 또는 전환성외화로 할 수 있다(지대법 제30조). 다만,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비율에 따라 한다. 북한은 외국투자기업이나 외국인의 외화사용방법을 외화현금방식과 외화무현금방식으로 나누어 외화현금의 유통을 막고 있다. 외화현금방식은 은행이나 지정된 외화교환소에서 북한원화(조선원)와 바꿔 사용하는 것이고, 외화무현금방식은 은행계좌를 통해 각종 외화별로 환치의 방법으로 외화를 사용하는 것이다.

지대에서는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을 해당한 물건이나 세관신고서 없이 북한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외화관리법 제25조)는 점에서 북한의 다른 영역에 비해 외화의 반출입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하에 북한 또는 다른 나라의 은행에 계좌를 둘 수 있다(지대법 제31조). 북한은 화폐를 북한원(조선원), 외화원(외화와 바꾼 북한원) 및 외화로 구분하고 있는데 외국투자기업 및 북한거주 외국인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하에 북한 무역은행 및 북한 내 다른 나라 은행에 각 화폐에 따라 개설되는 계좌(돈자리)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원계좌에는 북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획득한 북한원화를 예치하며, 잔액은 외화로 교환이 되지 않는다. 외화원계좌에는 태환성 외화를 북한원으로 환전한 돈을 예치하는데 외화 또는 외화와 바꾼 북한원으로 사용하며, 잔액은 외화로 환전할 수 있다. 외화계좌에는 지정된 외화를 화폐별로 예치하며 북한이나 외국의 무역회사 또는 북한 내 외국인 투자기업간의 채권채무관계 결제시 이용된다.<sup>109)</sup> 북한의 기관, 기업소의 외화사용은 외국투자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받는다.

무역에 있어서의 결제제도는 기본적으로 북한영역이나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나 차이는 없고,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외국환자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109) 『외화관리법시행규정』 제16조 내지 제20조 참조.

외국투자가는 북한영역 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인은행, 외국은행지점이 속한다(외국투자은행법 제2조). 다만, 외국인은행과 외국은행지점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할 수 있다(외국투자은행법 제2조단서)

따라서 외국투자은행도 외국투자은행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외국인의 외화예금, 외국환자업무, 외화송금, 수출입물자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6. 분쟁해결절차

지대법 제42조에서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경제무역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법규 및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관계법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재에는 임의적 분쟁해결제도가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공권적 분쟁해결제도로써 『재판소구성법』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가중재제도<sup>110)</sup>와 대외경제관계에 적용되는 제도로써 『대외경제중재법』에 의한 대외경제중재제도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외무역거래관계에서는 대부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중재기관이 특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외경제중재법』에 의한 중재제도 또는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해 분쟁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북한영역 내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중재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문제가 될 수 있다.<sup>111)</sup> 외국인투자기업은 북한법에 의해 설립된 내

110) 국가중재제도에 관하여는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앞의 책, 18~86면 참조.

111) 국가중재가 일방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즉, 국가중재에 의하면 손해배상뿐 아니라 위반당사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도 가

국법인<sup>112)</sup>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종전 북한 중재법 제17조는 국가중재 대상이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인민경제계획의 수행을 위한 계약체결과 이행과정에 제기되는 분쟁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북한산 물자 구입과 생산제품의 북한내 판매와 관련된 분쟁은 인민경제계획 수행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중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북한의 기업,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을 법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중재의 대상이 될 해석상의 여지를 제거하였다. 동법 제4조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대외경제중재법의 관할 범위를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등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중재의 대상으로 될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sup>113)</sup>

## 제 2 절 남북한교류협력제도와의 비교

남북한 교류협력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에도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명시하고, 제15조에서는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간의 교류에는 국가간의 무역과는 다른 특수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

능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관정집행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중재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외국투자자들도 국가중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상직, 앞의 글, 83면 참조. 그러나 국가중재의 경우 강제적 분쟁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준거법, 중재원, 중재절차 등에 관한 당사자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외국투자자로서는 역으로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12) 외국인투자법 제14조는 “공화국영역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3) 윤상직, 앞의 글, 75면 참조.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북한의 법제 속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은 없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남북한간의 교역은 대부분 남북한간의 합의를 통해 규율되고 있다.

여기서는 남북한간에 체결된 합의를 중심으로 북한측의 관점에서 그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남북한 교류협력제도의 의의

남북한 경제교류는 1988년 한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교역문호를 개방한다는 이른바 7·7선언이 천명된 후에 시작되었고,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라 함)가 채택됨으로써 그 본격적인 시작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체결된 남북한간의 합의서에도 교역협정, 원산지확인, 대금결제, 상사중재 등 교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남북한간의 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정비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민사, 형사, 상사적인 분쟁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성사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이에 따라 아직 공식적으로 발효되지는 않았으나 그 동안 교류협력제도상 불비했던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투자보장, 청산결제 등에 관한 합의서가 지난 11월 11일 가서 명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 2. 남북한 교역의 주체

남북한 교역의 주체에 관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함) 제1조제4항에서는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협력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도 남북한 교역의 주체가 될 수 있

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측의 교역의 주체는 다른 외국과의 무역과 마찬가지로 남북한간의 교역을 승인받은 무역회사들이 그 주체가 되고 있다.

### 3. 남북한 교역의 지도기관

남북한 교역의 지도기관으로는 대외경제기관인 내각의 무역성이 아니라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대남교역과 관련한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경제교류의 실무는 그 산하기구로 추정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주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의 정운업 회장 겸 무역성 지도국장은 남북경협 실무접촉 대표단의 단장을 맡아 11월 11일 가서명된 남북한간 4대 협의서의 채택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에도 광명성총회사, 삼천리총회사, 개선무역회사(옛 광명성무역총회사),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고려상업은행 등 큰 기업이 있어 대외무역 및 남북경협에 종사하고 있다.

### 4. 남북한 교역상의 계약과 이행

남북한 교역상의 계약에 관하여 부속합의서 제1조제5항에서는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 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간의 직접접촉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남북한 교역의 경우, 관세에 관하여는 부속합의서 제1조제10항에서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제제도에 관하여는 부속합의서 제1조제8항에서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남북한 은행간에 환결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대금결제는 주로 제3국에 개설된 거래은행을 통해 외국간의 무역과 같은 방식의 결제가 이용되어 왔다.

지난 10여년간의 남북한 교역 경험에서 보면 대금결제면에서의 한계가 교역확대의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즉, 북한은 현재 외화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로 무역대금 결제에 있어 신용장방식이나 현금결제방식을 기피하고 주로 무환구상무역으로서의 바터거래(물물교환)를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바터거래에서는 상호결제 가능한 적합한 물품을 선정하는데 다양성이 부족하고, 남한물품과 교환되는 북한물품의 가격산정이 어려우며, 무역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교역량과 교역금액을 합의해야 하는데 이것이 또한 교역규모의 확대에는 절대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sup>114)</sup>

그러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의 채택을 통해 경화결제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향후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5. 남북한 교역상 분쟁해결절차

분쟁조정절차에 관하여는 부속합의서 제1조제12호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 그 동안은 남북한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분쟁해결조항을 구체화하더라도 남북한간에 분쟁조정기구가 없고, 중개인이 개입된 사례가 많아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분쟁 해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남북한간 계약시 분쟁은 제3국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한다는 조항을 넣도록 지도하고 있고, 대부분 계약상에는 제3국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한다고 합의된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제3국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따라서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의 채택으로 향후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게 된 점은 남북한 교역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114) 윤기관,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대금결제상의 새로운 노력”,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1997년 10월호, 67~68면 참조.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1조).<sup>115)</sup> 남북한 상사중재위원회는 남북한이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제2조). 그리고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제3조).

1.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 사이에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으로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한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3.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
4. 제5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5. 제10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6.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기능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제4조). 그리고 중재판정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이상과 같이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국가간의 무역과는 다른 특수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한간의 후속적인 회담과 협의를 통해 불비한 제도는 계속적으로 보완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115) 이 규정만으로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은 모두 남북한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에 회부하는 강제중재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다른 중재방법에 의할 수 있는 임의중재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남북한 사이의 상사분쟁이라도 계약당사자들의 다른 중재방법을 합의하여 계약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제 4 장 특수지역 무역제도와 비교

## 제 5 장 결 론: 북한 무역제도의 시사점

이상에서 북한의 무역법제 및 『북·일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합의서』의 분석을 통해 북한영역 내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무역제도의 의미와 그 실태를 분석하고, 또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무역제도와 남북한 교류협력제도와의 대비를 통해 그 의미를 검토해 보았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대외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무역상대국과 교역품목을 다양화하고 무역회사의 설립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무역법을 새로 채택하였으며, 대외경제계약법, 대외경제중재법과 다수의 외국인투자관련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대외무역 및 외국인투자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리고 남북한관계에 있어서도 그 동안 교류협력제도상 불비했던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투자보장, 청산결제 등에 관한 합의서가 지난 11월 11일 가서명되는 등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또한 1998년 헌법개정과 함께 그 동안 무질서하게 진행되어 왔던 무역관련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통제와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을 일신하였다. 무역관련 조직의 개편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정무원의 대외경제위원회를 폐지하고 내각에 무역성을 신설한 것이다. 무역성에는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던 무역관련 기능들이 통합되게 됨으로써 대외무역의 중추적인 기구로 부각되었다.

북한의 대외무역과 관련한 제도 개선의 방향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체로 국제적 무역질서에 편입되는 과정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분쟁해결의 객관성, 신속성, 공정성을 강조한 부분이나, 국제조약과 관례에 대한 존중을 명시한 것은 설혹 그것이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에 대한 경계감을 표출함과 아울러 대외무역의 조직 개편과 제도화를 통해 무역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것이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는 다소간 과거의 입장에서 후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일련의 합의서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대외교역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제도의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의 무역관련제도에는 몇 가지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법규간의 정합성 미비에 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더라도 그와 관련된 다른 법령들이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법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법해석 및 적용상의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의 법률에서 노출되고 있었다.

둘째, 법률과 시행규칙간의 위계질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것은 다른 법령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대외적인 부문에서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령간의 체계를 유지하고, 위임의 한계를 준수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법령 조항에 구체성이 결여되거나 불명확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용어의 의미가 애매하거나, 문맥상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잔존하는 것은 북한 외부의 계약당사자들에게 있어 법령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넷째, 법률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과도하게 잔존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크게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한계라고는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한 대외경제계약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국가의 지도와 감독, 그리고 승인을 규정화하고 있는 것은 북한측과 대외계약을 체결한 외국측 당사자로서는 계약의 효력 또는 이행 여부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무역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남북한 교역에 있어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한 교역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정부가 해야 할 일에 관한 것이다.

첫째, 남북한간에 교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건과 표준계약서를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이중과세방지, 상사 분쟁해결절차, 투자보장, 청산결제 등에 관한 4대 합의서가 채택되게 된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기는 하나, 이를 바탕으로 교역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거래에 관한 절차를 계약의 체결 및 효력으로부터 선적, 상품검사, 보증, 결제, 분쟁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남북한의 계약당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역에 임할 수 있도록 지침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작업에 있어서는 북·일간에 체결된 상품거래에 관한 합의서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둘째, 청산거래의 후속조치로서 구 동서독간에 시행되었던 스윙제도(Swing, 무이자신용공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청산협정에 의한 거래방식의 문제점, 특히 청산잔액 처리문제와 결제통화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즉, 일정기간 반출입이 진행된 후 차액을 어떤 국제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금융협정의 체결을 통해 신용공여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무이자로 그 차액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연기시켜 주는 것이다. 그 차액은 남북한경제협력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남북한 교역을 촉진함과 동시에 통일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남북한간의 교역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에 관한 것이다.

첫째, 북한측의 무역회사 또는 계약상대방이 대외경제거래를 하도록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sup>116)</sup> 계약 자체에 대해서도 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승인이 계약의 효력발생에 전제조건이 되는지 여부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16) 대외경제계약법 제11조 등의 경우로서 북한영역에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한 계약, 거래액이 많거나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계약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 제18조에 따르면 나라의 안전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주는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0조에서는 계약을 승인한 기관은 해당계약이 효력을 가진 때부터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자본주의사회의 계약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

셋째, 계약상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의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불가항력(어찌할 수 없는 사유), 손해보상, 계약의 해제, 해지, 취소 등에 관해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여 명시함으로써 쌍방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한다.

넷째, 분쟁해결절차 특히 중재의 절차에 관하여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남북한간에 상사중재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기는 했지만 아직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그러므로 중재에 관하여는 제3국의 중재기관까지를 포함한 중재재판정, 준거법, 중재의 효력 등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남북한 당국 및 남북한 양측의 교역당사자들은 현실적으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들이 상당히 미비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정비 또는 계약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부 록

1. 북한의 무역법 해설<sup>117)</sup>

## 제 1 장 무역법의 기본

무역법은 전5장 5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무역법의 기본으로, 무역법의 사명과 무역을 함에 있어 지키지 않으면 안될 원칙, 요구가 규정되어 있다.

무역법은 우선, 무역에 있어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하는 것을 자기사명으로 하는 규정이다.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 인민경제발전에 공헌하는 일은 무역에 있어 북한노동당과 국가가 견지하고 있는 일관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관철할 수 있도록 무역법의 사명이 규정되었고, 북한식 사회주의의 본성적 요구를 바탕으로 무역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법적 보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무역법은 다음으로, 무역에 관해 지키지 않으면 안될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무역법에 의하면,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신용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한다는 것은 각 부문, 각단위로 각국과의 무역거래를 다양한 형식,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이며, 신용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수출품목의 질과 납입기일을 보장하고 대금을 적시에 지불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원칙은 무역거래를 폭넓게 실행해 제국주의자의 경제봉쇄를 물리치고 사회주의 건설을 강건히 추진

117) 이 무역법 해설부분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무역법 해설”, 『북한뉴스레터』 1998년 5월호, 14~16면의 자료를 원문 그대로 게재한 것임. 이 자료는 일본의 조총련계 싱크탱크인 ‘朝鮮問題研究所’가 발간하는 월간 『朝鮮資料』 1998년 5월호에 이 법에 대한 자세한 해설(‘貿易法について’)이 실린 바 이를 번역 정리한 것이라고 함.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무역에 있어 지키지 않으면 안될 원칙은 또, 무역을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입각해 실행하고 국가의 수출입허가 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이 원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성적 요구와 자립적 민족경제를 견고히 보호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로부터 제기된 원칙이다.

무역법은 무역에 있어 지키지 않으면 안될 원칙을 정확히 규정함으로써 무역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대외적 권위를 높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확고한 보증을 하고 있다.

무역법은 또, 무역거래 원칙을 구현하는데 제기되는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무역이 통일적으로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응한 지도와 보장을 강화하고, 무역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임과 함께 능력있는 무역 일꾼을 계획적으로 육성하여 무역분야에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발전시키는 일이 법으로 규정된 중요한 요구이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의해 무역에 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고, 무역을 발전시켜 북한식 사회주의를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법적 보증이 확실히 만들어졌다

## 제 2 장 무역회사의 지위와 설립, 관리운영 절차

무역법 제2장에서는 무역회사의 지위와 설립, 관리운영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무역법은 무역회사를 수출입활동의 담당자로 하여 그 지위를 규정한다. 무역회사를 수출입활동의 담당자로 하는 것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행하는 무역거래를 자기 소유재산으로 채산을 맞춰 경영활동상의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한다는 것이다. 무역회사의 법적 지위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됨으로써 무역회사의 역할을 높이고, 대외 무역을 계획적으로 전망성 있게 발전시키는 일이 가능토록 보증이 이루어졌다.

무역법 제2장에서는 또, 무역회사의 설립과 관리운영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무역회사의 설립제도는 회사의 설립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제도이다. 무역회사의 설립제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야말로 무역회사에



관해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일이다.

무역법에 의하면 무역회사는 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승인 하에 설립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무역법은 무역회사가 계약을 정확히 체결, 이행하고 해당기관이 그 심의에 관한 책임을 지고 일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여 무역회사가 무역활동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 제 3 장 무역계획의 작성

무역법 제3장에서는 무역계획의 작성에 있어 제기되는 원칙적 요구와 그 시행에 관해 제기되는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무역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이다.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이고 계획화 사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문제중 하나이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요구에 따라 무역활동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야말로 무역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조속히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무역법은 무역계획을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으로 규정하고 수출계획과 수입 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과 수출품, 수출협동품의 생산계획작성 절차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 있다. 또, 무역화물수송계획을 품종별, 수송수단별, 구간별로 나눠 연간, 분기, 월별로 세우고 무역계획을 해당 계약에 근거해 책임지고 수행하는 일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규정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성적 요구에 따라 무역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집행하는 일로 무역활동을 국가의 통일적 계획하에 성공적으로 벌일 수 있게 하는 법적 보증이 된다.

### 제 4 장 수출입 질서

무역법 제4장에선 수출입허가기관과 수출입허가질서, 허가를 받은 물자의 반출입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무역법에 의하면 수출입허가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무역법은 정무원 대외경

제기관이 매년 수출입허가지표목록을 작성, 공포하고 그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엄격히 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 수출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무역법은 또, 수출입허가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 의하면, 수출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무역회사는 수출입허가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수출 또는 수입업무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법에서는 수출입허가를 받은 지표가 변하거나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에 수출입허가를 다시 받는 일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출입허가질서를 세웠더라도 이에 근거한 반출입질서를 세울 수 없다면 수출입물자에 대한 통제를 원만히 보장할 수 없다.

무역법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해당문서와 계약서를 검토하고 반출입승인을 시행하는 제도를 규정하여 수출입물자에 대한 국가의 지도통제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제 5 장 지도통제

무역법 제5장에선 무역사업의 지도통제에 제기되는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무역법은 무역사업에 관한 국가의 지도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로 하여금 수출품의 비중을 높이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무역을 확대 발전시키는 일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기관이 무역사업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를 적시에 정확히 시행하는 일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 2.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1994년 5월 1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통과 1994년 7월 1일 시행)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대외무역의 발전과 대외무역질서의 유지보호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에서 대외무역이라 함은 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과 국제서비스무역을 지칭한다.

**제 3 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은 본 법에 의하여 전국의 대외무역 사업을 관장한다.

**제 4 조** 국가는 통일적 대외무역제도를 실행하고 법에 의하여 공평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유지보호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장려하고 지방의 무역발전의욕을 고취하며 대외무역사업자의 자주권을 보장한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타국가 및 지구와의 무역관계를 촉진, 발전시킨다.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대외무역관련 국제조약, 협정의 체결국이나 참가국에게 호혜평등의 원칙을 따라 최혜국대우 및 최혜국 국민대우를 부여한다.

**제 7 조** 어떠한 국가나 지역이 무역부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 차별적인 금지, 제한 및 유사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국가나 지역에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2 장 대외무역경영자

**제 8 조** 본법에서 대외무역사업자라 함은 본법규정에 의해 대외무역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을 말한다.

**제 9 조** 물품 및 기술수출입의 대외무역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명칭 및 조직기구
2. 명확한 대외무역사업범위
3. 대외무역업무에 필요한 장소, 자금과 전문인원
4. 타인에게 수출입업무를 위탁하여 규정된 실적에 도달하거나 수요 되는 수출입물품 공급원이 있는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에 따른 기타 조건

전항에서 규정한 시행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외국투자기업은 관련 되는 외국투자기업의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기업의 자가용품의 비생산 물품, 기업생산에 필요한 설비, 원자재와 기타 물자를 수입하고 그 생산 물품을 수출할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를 면제한다.

**제10조** 국제서비스 무역기업과 조직의 설립 및 그 경영활동은 본법과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대외무역사업자는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윤과 결손을 책임진다.

**제12조** 대외무역사업자는 대외무역사업활동에 있어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물질을 보증하고 애프터서비스에 충실해야 한다.

**제13조** 대외무역사업허가가 없는 조직이나 개인은 국내의 대외무역 사업자에게 사업범위 내에서 무역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대외무역사업자는 위탁자에게 실제의 시장정보, 상품가격, 거래선 등 관련 사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탁계약에 서명하여야 하며 쌍방의 권리의무는 계약에 따른다.

**제14조** 대외무역사업자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유관부문에 대외무역사업활동 관련문서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관부문은 제공자에 대한 상업비밀을 지켜야 한다.

### 제 3 장 물품수출입과 기술수출입

**제15조** 국가는 물품 및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락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 물품이나 기술이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사회의 공공이익을 유지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이나 수입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국내공급이 부족하거나 국내자원의 고갈방지를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수출대상국가나 지구의 시장물량의 한계로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국내특정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5. 모든 농업, 목축업, 어업제품의 경우 형태와 관계없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6. 국가의 국제금융의 위상과 국제수지평형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7.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 의해 수출이나 수입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17조** 물품이나 기술이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에 속할 때, 국가는 수입이나 수출을 금지한다.

1. 국가안전이나 사회 공공이익에 위해가 되는 경우
2. 인간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이나 수입금지가 필수적인 경우
3. 생태계 및 환경을 파괴할 경우
4.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 의해 수출이나 수입 금지가 필요한 경우

**제18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은 국무원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 혹은 금지 수출입품목이나 기술목록을 제정·조정·공고한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은 단독으로 혹은 국무원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국무원 비준을 득한 후 제16조, 제17조 규정범위 내에서 전항에서 규정한 목록 이외의 특정물품, 기술의 수출이나 수입을 임시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19조** 물품의 수출이나 수입제한에는 쿼터관리나 허가증관리를 하고 기

술의 수출이나 수입제한에는 허가증관리를 한다. 쿼터나 허가증관리대상의 물품이나 기술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 혹은 국무원 유관부문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득한 후에 수출입이 비로소 가능하다.

**제20조** 물품의 수출입쿼터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이나 국무원 유관부문의 각자의 직권으로 신청자의 수출입실적, 능력 등의 조건에 근거하여 효익, 공정, 공개와 경쟁의 원칙 하에서 분배한다. 쿼터분배 방식과 방법은 국무원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문화재, 야생동식물 및 그 산품 등의 물품은 기타 법률이나 행정법에 수출입의 제한이나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 4 장 국제서비스무역

**제22조** 국가는 국제서비스무역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23조**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서비스분야에서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 의하여 용인될 경우 조약체결 상대방이나 참가국에서 시장진입을 허락하거나 국민대우를 부여한다.

**제24조** 국가는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제서비스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사회공공이익의 유지보호
2. 생태환경 보호
3. 국내 특정 서비스산업의 육성
4. 국가외환수지 균형 유지
5.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제한

**제25조** 국가는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제서비스 무역을 금지한다.

1. 국가안전이나 사회공공이익에 해가 되는 경우
2. 중화인민공화국이 담당하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잇는 경우

**제26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과 국무원 유관부문은 본법과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국제서비스 무역을 관리한다.

### 제 5 장 대외무역질서

**제27조** 대외무역사업자는 법에 따른 사업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외무역사업활동을 해야 하며 아래의 행위를 금한다.

1. 수출입원산지증명, 수출입허가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매매하는 행위
2.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이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3. 경쟁자를 배척함으로써 불공평한 경쟁을 하는 행위
4. 국가의 수출관련 환급세금을 사취하는 행위
5.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28조** 대외무역사업자는 대외무역사업활동 중에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결제하고 외환을 사용한다.

**제29조** 수입상품의 수량증가에 따라 국내의 동일상품이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가 심각한 손해나 손해의 위협이 있을 시 국가는 필요한 보장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손해나 손해의 위협을 해소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30조**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될 시 이로 인해 국내에 이미 육성된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거나 실질적인 손해의 위협 혹은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할 경우, 국가는 필요조치를 취해 손해, 손해위협, 장애를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31조** 상품수출국이 수입상품에 대하여 형태를 불문하고 직접 혹은 간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내에 이미 육성중인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나 손해의 위협 혹은 장애를 초래할 경우 국가는 필요조치를 통해 이러한 손해나 손해의 위협, 장애를 제거, 경감할 수 있다.

**제32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 국무원이 규정한 관련부문이나 기구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 제 6 장 대외무역촉진

**제 33조** 국가는 대외무역 발전수요에 따라 대외무역서비스를 위한 금융기구, 대외무역발전기금, 위험기금을 조성한다.

**제 34조** 국가는 수출입신용대출, 수출관련 환급세금 및 기타 무역촉진조치를 취하여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 35조** 대외무역사업자는 법에 따라 수출입상회를 설립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수출입상회는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정관에 따라 그 회원의 대외무역 사업활동을 지도하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유관부문에 대하여 회원의 대외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건의를 하며 적극적으로 대외무역촉진활동을 수행한다.

**제 36조** 중국 국제무역촉진조직은 정관에 따라 대외무역연락업무, 전람회 개최, 정보제공, 자문서비스와 기타 대외무역촉진활동을 한다.

**제 37조** 국가는 민족자치구나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지구의 대외무역발전을 지원 촉진한다.

## 제 7 장 법률책임

**제 38조** 수출입 금지 혹은 제한 물품을 밀수하고 범죄가 성립되었을 경우 밀수처벌죄 보충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세관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은 동시에 대외무역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39조** 수출입 원산지증명, 수출입허가증을 위조, 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수출입원산지증명, 수출입허가증을 매매하거나 또는 매입자가 수출입원산지증명, 수출입허가증을 위조, 변조하였을 경우에도 형법 제167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했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고 단위의 직접적 책임있는 주모자와 기타 관련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167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동시에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은 그 기업의 대외무역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수출입



허가증이 위조나 변조된 것을 알면서 수입이나 수출하였을 경우 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0조**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 제한된 기술을 수출입하여 범죄가 성립되었을 경우 밀수처벌죄의 보충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1조** 국가대외무역직원이 직무태만, 부정행위 혹은 직권 남용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하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행정처분을 한다. 국가대외무역직원이 직무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 수수하거나 불법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뢰하여 범죄가 성립되었을 시 탐오죄, 수뢰죄의 보충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한다.

## 제8장 부칙

**제42조** 국가는 변경도시와 인접국가의 변경도시간의 무역, 민간변경 시장거래에 대해서는 신축성있는 조치를 취하며 우대와 편의를 제공한다. 세부사항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43조** 중화인민공화국 단독관세구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4조** 본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조·일 양국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간의 합의서<sup>118)</sup>

1998년 1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간에 개정 『조·일 양국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건』이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1963년 2월 27일에 처음 체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1965년 8월, 1980년 9월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번 개정은, ①전문에서 『일반조건』의 목적과 그 적용범위를 새로 언급한 것, ②무역거래에 관한 기본조건을 『1953년 INCOTERMS』로부터 『1990 INCOTERMS』로 변경한 것, ③상품검사와 그에 수반하는 상품의 계산근거를 보다 유연하게 한 것, ④포장조건을 UN협약에 의거하여 국제화한 것, ⑤배선(配船)조건을 무역의 다양화, 다각화하는 방향에 의거하여 개정한 것 등이다.

이하에서는 동 협정과 부속문서 『일본선박회사의 조선무역항에의 배선(配船)과 선박취급에 관한 조건』을 소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는, 평등·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의 상사와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 가맹회원과의 상품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조·일 양국 상사간의 상품거래와 관련한 결제 및 그 외의 거래조건에 관하여는 『조·일 양국 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고 한다)에 의할 수 있다.

개별거래에 있어서 특별조건은 개개의 계약에서 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와는 본 일반조건을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상호간에 협의하기로 한다.

본 합의서는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1980년 9월 17일에 체결한 『조·일 양국 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18) 이 합의서는 朝鮮問題研究所, 『朝鮮資料』 1998년 7월호, 47~59면에 일본어로 소개된 것을 국역한 것임.

3. 조·일 양국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간의 합의서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조무역회간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합의서는 서명한 날부터 5년간 유효로 하고, 계약자의 어느 일방이 합의서 만기 6개월전까지 서면으로 합의서파기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씩 연장된다.

이 합의서는 1998년 1월 26일 동경에서 체결하고, 조선어와 일본어로 각 2부 작성, 서명된 것으로, 이 두 가지 원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기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를 대표하여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 회장 本間徹治

### 조·일 양국 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과의 무역교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건은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의 상사와 동아시아무역연구회에 가맹한 회원회사간의 무역거래에 적용한다.

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무역거래를 행하는 일본의 모든 상사가 계약서에 본 일반조건을 이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 1. 계약의 체결

**제 1 조** 계약은 계약자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한 때 성립한다.

계약의 효력과 필요한 조건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서명에 의해 발생한다.

쌍방이 전신 또는 서신교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일방의 거래신청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정해진 기간내에 그 신청을 수락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한다.

## 부 록

이 경우 계약후 10일 이내에 매도측이 계약서 2통에 서명하고, 매수측에 송부한다. 매수측은 그것에 서명하고, 그 중 1통을 매도측에 반송한다.

단, 쌍방간에 계약서가 교환되지 않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조·일 양국 당사간의 상품거래에 이용하는 표준계약서는 본 일반조건에 첨부된 양식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서에 첨부된 모든 부록은 계약서와 불가분의 것이다.

계약서 및 부록에 보충·수정·삭제 등의 변경을 가하려고 하는 경우는 반드시 쌍방의 전신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 2. 거래의 기본

**제 3 조** 상품거래의 기본조건은 『1990년 INCOTERMS』 가운데 어느 조건을 계약자 쌍방의 합의하는 바에 의한다.

## 3. 선적시기

**제 4 조** 적기(積期)는 계약의 체결시에 있어서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기계 또는 설비의 매매계약서에 그 부속품 및 부분품의 구체적인 적기가 약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당해 기계 또는 설비의 시동에 지장이 없는 최후의 부속품 및 부분품이 선적된 날짜로써 기계 또는 설비의 선적완료일로 한다.

## 계 약 서

계약 제 호

19 년 월 일

쌍방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상 품 명
2. 수 량           ±   % 허용
3. 품질·규격
4. 가    격
5. 총 금 액
6. 결제방법
7. 포    장
8. 선적기일                   선적항                    도착항
9. 하역조건
10. 특기사항
  - A. 배선조건
  - B. 검사조건
  - C. 중재사항
  - D. 기타 특기사항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일체의 거래에 관한 제 조건은, 1998년 1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간에 체결된 『조·일 양국 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건』에 의한다.

매도측

매수측

#### 4. 상품검사

**제 5 조** 조선의 수출품의 품질, 수량 또는 중량의 결정은 조선의 상품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검사증으로써 대금지불의 계산근거로 한다.

또한, 일본의 수출품에 대하여는 일본에서 공인된 상품검사기관의 검사증으로써 대금지불의 계산근거로 한다.

단, 계약자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의 검사증명에 의한다. 선적검사비용은 매도측이 부담한다. 단, 필요에 따라 매수측이 자기를 위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매수측의 부담으로 검사를 행한다.

상품의 특성에 따라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기초하여 양·적지(揚·積地) 검사증명서의 평균치나, 양지(揚地) 또는 적지(積地) 검사증명서로써 대금지불의 계산근거로 할 수 있다.

또, 상품의 특성에 따라 계약자 쌍방의 합의에 기초하여 매수측은 자기의 비용으로 선적시에 입회를 할 수 있다.

#### 5. 포장 및 기호

**제 6 조** 계약에서 포장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매도측은 원거리의 해상수송과 그 후의 국내수송에 적합한 표준수출포장을 하기로 한다.

매도측은, 각각의 포장면에 비소실성도료로 계약번호, 상품명, 수하인, 규격, 케이스번호, kg단위의 정미중량(正味重量) 및 총중량을 명기하고, 주의기호가 필요한 상품에는 그 뜻을 표시해야 한다.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36조제1항 및 제2항B호에 규정된 『목적물은, 포장을 포함하여 이것이 체결시에 있어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져 있던 특별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주변 사정으로 볼 때,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능 및 판단력을 신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뢰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 6. 기술문헌

**제 7 조** 기술문헌은 생산에 있어서 기계 또는 설비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지도를 원활히 하고, 임시수리를 할 수 있도록 일본어 또는 조선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단, 무역용어, 기술용어 등은 영어로 표시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기술문헌에는 계약서 또는 그 외의 지도서번호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7. 보증

**제 8 조** 매도측은 상품의 품질, 수량, 규격, 성능 및 기술조건이 계약의 각각의 조항에 일치하는 것을 보증한다.

**제 9 조** 보증기간은 계약시에 쌍방이 상품의 특성에 맞추어 협의결정한다. 계약시에 보증기간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기계류는 시동일로부터 12개월을 보증기간으로 한다. 단, 선적일로부터 14개월을 경과할 수는 없다.

공장설비 1식 및 기타 기계장치 1식 외에, 무역관례상 보증이 부여된 상품(예를 들면, 내부장비품, 케이블제품 등)에 대하여도 그 보증기간을 쌍방이 계약체결시에 합의할 수 있다.

매도인의 과실에 의해 도면, 가동지도서 및 계약에 명시된 그 외의 자료의 제공이 지연되어 시동이 지연된 경우, 선적일로부터 기산된 보증기간은 매도측의 과실이 지속되는 기간동안 연기된다.

**제 10 조** 만일, 보증기간내에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매수측의 검사에 의해 판명된 경우, 매도측은 매수측의 통지에 의해 자기의 비용으로 그것을 수리하거나, 불량품 또는 부분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그 결함을 지체없이 제거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매도측의 부담으로 한다.

교환된 불량품 또는 부분품은 교환 후 매도측의 요구에 의해 3개월 이내에 반환하나 그 비용은 매도측이 부담한다.

발견된 결함에 의해 설비 또는 기계가 가동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동안 보증기간은 연장된다.

만일, 발견된 결함이 매도측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매수측이 설비나 기계의 조립 또는 보수를 매도측이 제시한 규정대로 하지 않았거나, 관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매도측은 보증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8. 배선조건(配船條件)

**제11조** 계약상, 일본측이 배선하는 경우, 남조선선박과 남조선 사람들이 승선한 선박, 남조선의 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한 상품수송은 할 수 없다. 단, 자유무역항은 제외한다.

계약당사자는 배선하는 선박의 선장에 대해 상대국의 법률과 규정 등을 준수시킬 책임을 진다.

**제12조** 선적의 통지와 집하의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FOB 조건의 경우

매수측은 선적예정일의 30일 이전에 선박입항예정일을 전신으로 매도측에 통지하고, 매도측은 통지수령후 6일 이내에 매수측에 전신으로 집하를 확인한다.

(2) CFR 또는 CIF 조건의 경우

매도측은 선적예정일의 10일 이전에 선명, 선의 국적, 선적항, 출항예정일, 양하항(揚荷港), 도착예정일, 상품명, 선적예정수량을 전신으로 매수측에 통지한다.

(3) 매도측은 상품의 선적 후 48시간 이내에 계약번호, 상품명, 수량, 중량, 선하증권번호, 선명 및 선적일을 전신으로 매수측에 통지한다.

(4) 항공화물의 경우는 항공운송장번호, 또는 LINERWAYBILL 번호를 전신으로 매수측에 통지한다.

**제13조** 계약상 배선을 행하는 측은 상대방 또는 당해기관의 확인을 받은 입항일보다, 해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선을 지연시킨 경우, 확



3. 조·일양국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간의 합의서

인을 받은 입항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간 경과 후의 항만창고료를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한다.

또, 배선을 받아들이는 측이 하역준비완료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상품의 집하를 지연시켜 선적에 지장을 주어 지선(遲船) 또는 공선(空船)을 발생시킨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 14조** 선박의 입출항수속, 및 화물의 양·적하역조건(揚·積荷役條件), 그리고 선박의 취급에 관한 조건은 따로 정한다.

## 9. 결제조건

**제 15조** 결제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신용장결제의 경우에는 매수측은 매도측을 수익인으로 하고, 거래은행이 발행하는 쌍방이 합의한 통화에 의해 계약상품대금잔액이 포함된, 조선측 은행과 일본측 은행간에 체결된 대리업무에 관한 협약에 기초하여 취소불가능, 일람불 신용장을 개설한다.

신용장의 개설기일은 계약자 쌍방이 계약시에 협의결정한다. 신용장의 유효기간은 선적 후 15일간으로 한다.

(2) 상품대금의 선불, 또는 후불 및 연불조건을 포함한 결제방법에 관하여는 쌍방이 계약시에 협의결정한다.

**제 16조** 매도측은 상품의 선적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받는다.

- ①무고장선적선하증권, 완전 1식
- ②송장, 정본 1통, 부분 2통
- ③품질검사증명서 및 수량 또는 중량증명서 정본 1통, 부분 2통
- ④포장명세서, 정본 1통, 부분 2통
- ⑤그 외 신용장에 규정된 자료

## 10. 계약의 조건변경 및 해지

**제 17조** 계약자의 일방이 계약에 정한 조건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

## 부 록

로 인해 계약의 효력 발생 또는 상대방의 계약가격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가격의 개정(改訂)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조건의 변경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제 18조** 다음의 경우 계약자의 일방은 계약 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전신 또는 문서로써 통고한 다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계약에 정해진 결제조건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 (2) 계약자의 일방이 상품의 인도 또는 인수를 양적(揚積)예정일의 월 말로부터 30일 이상 지연시킨 경우

## 11. 배상청구

**제 19조** 매수측은 양하항(揚荷港)에 도착한 상품이 약정의 조건 또는 선적서류의 기재사항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도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상품의 보증기간을 경과한 뒤 발생한 성능의 자연적 감쇠, 훼손에 대하여는 배상청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포장의 불비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매도측이 부담한다.

**제 20조** 배상청구의 유효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수량에 대하여는 당해상품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한 날로부터 50일 이내.
- (2) 품질에 대하여는 당해상품을 적재한 날로부터 75일 이내.
- (3) 수량, 품질 이외의 계약이행과 관련한 배상청구는 상품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한 날 또는 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4) 보증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는 보증기간 이내에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매수측은 사고내용을 매도측에 통지한다.  
이 경우 매수측은 보증기간 경과 후라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5) 상기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제21조** 일체의 배상청구는 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를 첨부하고, 서면에 의해 서류편으로 제기해야 한다.

배상청구의 날짜는 배상을 제기한 측의 우편기관의 수령증의 날짜에 의한다.

**제22조** 계약자의 일방이 제기한 배상청구에 대해 상대방은 배상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하등의 회답도 하지 않는 경우, 배상청구는 인정된 것으로 본다.

## 12. 벌칙

**제23조**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불이행상품대금의 3%의 벌금 및 일방에 준 實損額(증빙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을 지불해야 한다.

**제24조** 제17조 및 제18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의 인도 또는 인수를 지연시킨 측은 선적예정일로부터 15일간을 제외하고, 그 익일로부터 30일까지는 지연상품대금의 1%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그 후 지연 20일간마다 1%씩 가산한다.

단, 위약금은 상품대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의 청구는 서면에 의해 서류편으로 행하고, 청구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13. 배상금 및 위약금·보상금의 지불

**제26조** 배상금 및 위약금·보상금은 당해계약에서 규정된 통화에 의해 금액 확정 후 60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한다.

단, 계약자 쌍방이 합의한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14. 분쟁의 해결 및 중재

**제27조** 계약의 체결이나 계약의 이행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해서 생긴 모든 분쟁은 계약자 쌍방의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계약자 쌍방의 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불만의 제기자가 조선측인 때에는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일본측인 때에는 동아시아무역연구회에 각각 의뢰하여 해결을 도모하도록 한다.

의뢰를 받은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동아시아무역연구회는 그 뜻을 서로 연락하여 분쟁의 해결을 촉진한다.

계약자 쌍방은 의뢰한 뒤 6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

**제28조** 중재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 (1) 피신청인이 일본측인 경우 일본의 국제상사중재협회에 제소한다.
- (2) 피신청인이 조선측인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
- (3)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한다.
- (4) 중재는 제소를 접수한 중재기관의 사건심리규정에 의해 중재기관의 소재지에서 행한다.  
중재인의 재결은 쌍방에 대해 최종적이고 의무적이다.
- (5) 중재는 분쟁 발생 후 15개월 이내에 제소해야 하며, 그 기간 후에는 제소할 수 없다.
- (6) 중재비용은 재결에 의해 따로 정한 외에는 패소측이 부담한다.

#### 15. 불가항력

**제29조** 전쟁, 풍해, 자연화재, 수해로 계약자 쌍방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 쌍방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가항력의 사태는 사전에 예견할 수 없고 계약체결 후에 발생한 것이

라야 한다.

불가항력의 사태 하에서는 쌍방의 계약상 의무이행기간은 그러한 사태 또는 그 결과가 작용하는 기간동안 연장된다. 그러나 불가항력의 사태 또는 그 결과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어느 측도 잔여계약 이행을 포기하는 권리를 가진다.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도측이나 매수측은 즉시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불가항력의 사유가 2개월간 지속되든가 또는 해소된 경우는 그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발생의 관계당국기관 또는 관계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재해증명서를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한다.

## 16. 기타

**제30조** 계약의 체결에 있어 상품의 특성, 또는 당해 거래의 특수성에 의해 필요한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본 일반조건의 각 조항과 다른 조건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

**제31조** 본 합의서의 내용은 체결자 쌍방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가 없는 한 어떠한 조항도 수정·보충할 수 없다.

본 합의서는 체결자의 일방이 본 합의서를 폐기하는 뜻의 의사를 표명한 날로부터 90일간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본 합의서에 근거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은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본 합의서의 조항이 적용된다.

**제32조** 본 결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그 외의 조건 및 의심스러운 문제는 그 때마다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3조** 조·일 양국의 상사간에 교환되는 일체의 문서는 조선어,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기로 한다.

부 록

일본선박회사의 조선 무역항에의 배선(配船)과  
선박 취급에 관한 조건

(이하 생략)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강정모, 『북한의 무역 및 대외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2.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무역론』, 197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에는 어떤 무역회사가 있나』, 1999.  
 대한상사중재원, 『남북상사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1994.  
 민족통일연구원, 『대북투자보호 및 분쟁해결방안 연구』, 1993.  
 박정동, 『북한의 경제개발전략에 대한 일고찰』, 한국개발연구원, 2000.  
 박정동, 『북한의 경제특구 - 중국과의 비교』, 한국개발연구원, 1996.  
 박정원, 『북한법률용어의 분석(IV)』, 한국법제연구원, 1998.  
 박정원, 『북한법률용어의 분석(IV)』, 한국법제연구원, 1998.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박정원, 『북한헌법(1998)상 경제조항과 남북한경제통합』, 한국법제연구원, 1999.  
 법무부, 『북한법연구 I: 통치기구·사법제도』, 1985.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I)』, 1997.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1996.  
 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 - 국가중재재판제도를 중심으로 -』, 1995.  
 법제처,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향』, 1999.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1991.  
 법제처, 『북한의 합영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992.  
 법제처, 『중국법제개요』, 1990.  
 북한연구소, 『북한의 재판제도』, 1991.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1994.  
 신용식·안성조,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 북한의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 법규 -』, 한국무역협회, 1998.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8.

참고문헌

- 장명봉, 『분단국가의 통일헌법 연구 - 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와 자료 -, 국민대출판부, 1998.
-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1996.
- 최종고 외, 『북한의 법과 법이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
- 통일원, 『북한무역상사 등 관련기관 일람』, 1997.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1996. 1.
- 권경복, “북한의 무역조직 개편과 시사점”,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1999년 7월호.
- 권경복, “정무원의 작전국: 국가계획위원회”,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1998년 3월호.
- 권오승,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 대륙연구소, 『북한연구』 제4권제4호, 1993 겨울.
- 권오홍,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 및 경제·무역조직 정비 현황과 전망”,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1999년 4월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무역법 해설”, 『북한뉴스레터』, 1998년 5월호.
- 신용식, “북한에서의 외환관리”, 한국경영법무연구소, 『월간 경영법무』, 1995. 10.
- 신용식,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 한국경영법무연구소, 『월간 경영법무』, 1995. 8.
- 윤기관,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대금결제상의 새로운 노력”,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1997년 10월호.
- 윤상직, “북한중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대외경제중재법상의 무역중재를 중심으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2000년 2월호.
- 이순우,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방안”,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법·제도 실천과제 연구』, 1993.
- 이찬우,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개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http://www.kotra.or.kr/main/info/nk/law/lawsu\\_b3.php3](http://www.kotra.or.kr/main/info/nk/law/lawsu_b3.php3)).
- 임강택, “대외무역정책”,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1999년 9월호.



- 정동윤,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법”, 『북한법 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 1994.
- 정동윤, “북한대외경제법의 회고와 전망”, 고려대 법학연구소, 『북한법률 행정론집』 제10집, 1995.
- 정원준,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해설”, 『북한뉴스레터』 1999년 5월호.
- 제성호,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령 분석 및 평가”,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2권 1호, 1993.
- 崔勤之, “중국의 시장경제법률제도의 확립과 정비”, 『법제연구』 제19호, 2000. 11.

## 2. 북한문헌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법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 김달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평양: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89. 2).
- 김응호,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관철하는 것은 현 시기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3).
-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4).
- 리종열, “공화국무역상사의 법적 지위와 그 기본임무”, 『법학논문집 4』(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서창섭, “우리나라 계획적 계약의 법적 본성과 그 리행원칙”, 『법학논문집 4』(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최영옥, “현 시기 우리 당이 제시한 무역정책과 그 정당성”, 『경제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2).
- 한수길, “대외무역을 발전은 경제건설에 있어서 절실한 오늘의 요구”, 『근로자』, 1991년 4호.

### 3. 외국문헌

大内憲昭, 『法律からみた北朝鮮の社會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基本法令集付』(東京: 明石書店, 1995)

小島麗逸(編著), 『中國の經濟改革』(東京: 勁草書房, 1988)

金文成, “擴大發展している對外關係と外國人投資の展望について”, 朝鮮問題研究所, 『朝鮮資料』1999年 5月號.

Chung, Joseph Sang-hoon,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Chung, Joseph Sang-hoon, “North Korea’s International Trade: Appraisal and Prospects” in Young C. Kim, ed., *Foreign Policies of Korea*, 1973

Lee, Joung-Koon, “North Korean Foreign Trade in Recent Years and the Prospects for North-South Korean Trade”, *Journal of Korean Affairs*, Vol. IV, No. 3, 1974. 10.